

# 함께하는 FTA

August 2014 vol. 27



한국의 차기 FTA 전략 진단:

한·중 FTA/TPP/RCEP/한·중·일 FTA/영(英)연방 3국

파워 인터뷰: 하이메 포마레다 주한 페루 대사

컬처 프리즘: 전시회 중인 조영남



# 2014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FTA 활용부문 포상

FTA 활용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합니다.



2014년 9월 1일(월)까지 신청  
기업(대/중소기업 구분)분야 및 지원 분야 포상

## 포상 분야 및 대상

- 기업 부문(개인 또는 단체)** 대·중소기업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 촉진에 기여한 자  
※대기업(증권기업, 공공기관 포함)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지원 부문(개인)**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FTA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이 인정되는 자

## 포상 규모

| 포상 분야        | 훈격      | 수량 |
|--------------|---------|----|
| 기업 부문        | 대통령 표창  | 1  |
|              | 국무총리 표창 | 1  |
|              | 장관 표창   | 3  |
| FTA 활용 지원 부문 | 장관 표창   | 3  |

※위 훈격·수량 등은 관련부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4년 6월 10일(화)~2014년 9월 1일(월)  
-소정의 제출양식을 갖추어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
- 공적심사** 2014년 9월 11일(목)~2014년 9월 26일(금)
- 포상시기** 2014 동반성장주간(11월 예정)

## 접수방법 및 문의

- 접 수처**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책관 총괄기획과
- 문 의**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박혜영 사무관  
(044-203-4122, phy0211@motie.go.kr)
- 홈페이지** www.motie.go.kr 또는 www.fta.go.kr 참조



왼쪽부터 강동구·유영웅·민경원 관세사

포토그래퍼가 가장 애를 많이 먹는 피사체가 아기, 동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저씨' 3명도 굉장히 어려운 도전 과제다. 아기, 동물은 찍기는 어렵지만 찍어 놓으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아저씨 3명으로 눈길이 가는 사진을 만들어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웨딩 사진보다 힘들었다”는 두 관세사(한 명은 미혼)의 푸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30분의 사투 끝에 위의 사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고생한 이유는 단 하나. “근엄해 보이지 않아야 고객(FTA 실무자)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전화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촬영에 나선 3명은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사후검증지원실에서 직접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관세사들이다. 알고 보면 사후검증은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지만, 기업 실무자들 입장에선 마치 ‘세무조사’ 같은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강동

구 관세사는 “1차 사후검증은 상대국 세관 직원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문의하는 성격에 가까우므로, 원산지판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조언했다.

FTA 사후검증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불과 1~2년 사이로 국내에도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사후검증 상담 사례가 가장 많은 FTA사후검증실에서 일하다 보니 이들 세 명의 관세사들은 짧은 시간에 사후검증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민경원 관세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해당 국가의 법률 등을 많이 조사한다. 스스로도 짧은 시간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커 가는 것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이들 3명의 나이는 3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다양하지만, 이들은 서열을 정하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조직에 소속되면 수동적이 될 수도 있으나, FTA무역종

강동구·민경원·유영웅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실 관세사

사후검증,  
당황하지 말고,  
우릴 불러줘요~

합지원센터에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각자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상담 기업 하나하나를 전담 마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만족도도 큰 편이다. 유영웅 관세사는 “하나의 케이스에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 이들 세 명의 관세사들은 짧은 시간에 사후검증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민경원 관세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해당 국가의 법률 등을 많이 조사한다. 스스로도 짧은 시간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커 가는 것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지난 6월 이들이 써낸 책 ‘FTA사후검증대응 완전정복!’은 이런 분위기가 물씬 묻어난다. 기업 실무자들이 읽기 쉽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 디자인, 컬러에서 세심함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무료 배포된 이 책은 한 달 만에 1쇄 2000권이 거의 소진되어 추가 인쇄를 계획 중이다.❶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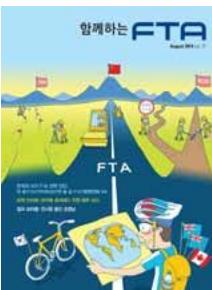
August 2014 vol. 27



###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4년 8월 11일(통권 27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운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COVER STORY

한국의 새로운 FTA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한·중 FTA는 길을 열심히 뒤는 중입니다. TPP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리저리 재보고 있군요. RCEP과 한·중·일 FTA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호주, 캐나다와 현재 협상 중인 뉴질랜드는 배낭의 깃발로 표시되었네요.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 FTA People

01 강동구·민경원·유영웅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실 관세사  
안종만

### Issue Focus

04 실질 타결된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주요 내용  
최필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 06

한·페루 FTA 3주년  
성과와 의미  
하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교수

### 08

이달의 리포트: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안전망 이상 무?

### 09

이달의 리포트:  
국내외 기업의  
우리나라 FTA 활용전략

### 18

영(英)연방 3개국과의  
FTA 추진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 FTA Cartoon

10 한국 농업의 경쟁력!  
애플수박에서 찾다!  
안종만

### COVER STORY

12 한·중 FTA와  
산업 경쟁력의 역학관계  
최필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 14

TPP 참여의 득실과  
한국의 입장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상분석실장

### 16

RCEP 추진 현황과  
주요 내용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 17

한·중·일 FTA 협상 경과,  
의미 그리고 과제  
이와타니 시게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 30

세계의 FTA:  
⑦ 일본의 FTA 추진동향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 Power Interview

20 하이메 포마레다  
주한 페루 대사

### Leader's View

22 한·중·일  
FTA 삼국지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 FTA Lounge

24 샌드위치패널 제조라인  
제조업체-일광메탈포밍

### 26

차(茶): 은은한 향취에 담긴  
한국의 전통  
양충모 객원기자

### FTA Study

28 자유무역의 역사:  
⑦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 INDEX

44 FTA 용어 & 독자의 소리

32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⑦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이민선 관세사

34 원산지관리 실무:  
⑥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박종광 Ciel HS 대표

36 사후검증 따라잡기:  
⑧ 섬유 및 의류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검증Ⅱ  
강동구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관세사

38 Culture Prism  
38 조영남 화가&가수

40 각궁 명인 김윤경 궁장

FTA News  
42 제11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등



실질 타결된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주요 내용

## 터키 최초의 서비스·투자 협정...경제협력 심화 기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 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에서 양측은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한·터키 FTA는 지난해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 발효(2013년 5월 1일)에 이어 서비스·투자협정 타결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되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터키로서는 최초로 서비스·투자협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가 된다.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7월 7일(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실질적 타결'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서비스협정

서비스협정의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44쪽 참조) 구조에 기반하되, 한·EU FTA 수준의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GATS와 같이 금융, 통신 등은 부속서 형태로 규율하되 전자상거래

###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에서의 일반적 의무

- 내국민 대우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대해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설립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시장접근 제한금지 공급자 및 설립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설립 시 사업자의 법적 형태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 합리적인 국내 규제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투명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

분야는 별도 챕터로 구성하는 등 한·EU FTA의 요소가 반영됐다.

협정문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드1(국경 간 서비스무역), 모드2(해외소비), 모드3(상업적 주재), 모드4(자연인의 이동) 등 모든 서비스 모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공공안전, 공중도덕·질서,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을 위한 제한 조치는 '예외'가 허용된다. 일반적 의무로서는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제한금지, 합리적인 국내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양허 수준은 양국의 DDA(도하 개발 어젠다) 양허안<sup>1)</sup>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터키측은 우리측에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등 문화 서비스와 환경 서비스 등 총 18개 분야에서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력이동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주재가 허용된 분야의 '핵심인력(key personnel: 관리

### 한·터키 FTA 투자협정에서의 일반적 의무

- 투자의 대우 설립 전(pre-establishment) 투자(투자의 진입/admission), 즉 투자 자유화를 의미)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투자 자유화 의무 규정
- 혜택의 부인 제3국인이 소유하고 타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타당사국 기업(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투자협정 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 이행요건 부과 금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운영, 매각, 처분 등에 관하여 이행요건 부과 금지 의무를 규정

### 투자협정

투자협정의 적용범위와 관련, 서비스 투자(모드3)는 서비스협정에서 규율하고, 비서비스 투자(제조업, 농업 등)에 대해 투자협정으로 규율 키로 했다(한·미 FTA는 서비스 투자 및 비서비스 투자 모두 투자챕터에서 규율). 다만, 연계조항을 두어 서비스 투자도 투자협정의 투자보호 규정을 적용해 동등하게 보호하게 된다.

한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CS)와 관련해 냉각기간, 제척기간, 준거법, 종재인 임명 등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간접수용 부속서를 통해 간접수용의 정의, 간접수용의 판정기준, 간접수용의 예외(환경, 보건, 부동산정책 등)를 명확하게 규정했고, 단기 세이프가드 부속서에서는 한·미 FTA 수준의 송금 조항을 규정해 투자자 보호와 국가 규제권한 간 균형을 추구했다.

투자 유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비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은 한·미 FTA와 유사하다. 터키측은 국내적으로 민감한 분야인 부동산 취득, 에너지, 광업, 농업, 어업 및 일부 제조업(의약품, 설탕, 담배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권한을 확보했다. 투자협정의 일반적 의무로 투자의 대우, 혜택의 부인, 이행요건 부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❶

1) 2005년 WTO DDA 협상 당시 제시된 양허안으로, 현재 유효한 WTO GATS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했다.



한·페루 FTA 3주년 성과와 의미

## FTA 발효 이후 양국 경제교류 급물살

2011년 8월 발효된 한·페루 FTA가 3년을 맞았다. 페루와의 FTA는 전략적으로 칠레 다음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새로운 수출 교두보를 확보함은 물론 페루가 보유한 풍부한 자원을 연계한 일종의 자원 협력형 FTA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01  
국내 농업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농축진흥청이 지난해 11월  
페루 수도 리마에 개소한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 제조품과 자원의 교환 및 교역량 증가

한·칠레 FTA 발효 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이 4배 이상 증가하며 한·칠레 FTA는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칠레보다 인구가 두 배 가까이 많은 페루와의 FTA 또한 한·칠레 FTA 못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많은 FTA 전문가들은 전망했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페루로부터 아연, 구리, 수산물 등을 수입하고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일반 제조업 상품을 수출해 왔다. 물론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 추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페루로부터의 광물자원 수입량은 변동성이 큰 편이었다.

하지만 페루가 APEC에 가입하고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양국 간의 교역은 안정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의

한·페루 무역 분석(2013년~2014년 상반기)에 의하면, 수출은 승용차(36.5% 비중), 합성 수지(11.9% 비중), 화물자동차(5.5% 비중), 컬러 TV(3.3% 비중), 항공기부품(2.8% 비중), 건설 중장비(2.4% 비중), 자동차부품(2.2% 비중), 의약품(2.1% 비중), 기타 정밀·석유화학제품 순으로 큰 비중을 보이며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4년 들어 항공기부품과 의약품 수출은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언급했다시피,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대개 광물들로 동광, 아연광을 비롯해 에너지자원인 LPG 등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 2014년 들어서는 수산물과 과일류 수입도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페루 FTA의 성과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부분은 FTA 이후 페루의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들의 점유율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화학제품 분야나 수송기기, 목재 및 제지 분야에서 같은 FTA 경쟁국인 일본(2012년 3월 1일 일·페루 EPA 발효)에 비해 약진하고 있다.

### 일본보다 먼저 맺은 FTA 선점 효과 '톡톡'

페루의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 변화를 살펴 보면 한·페루 FTA 발효 전인 2010년 우리나라가 미국(19.3%)과 중국(17.0%) 등 전통적인 페루 수입시장 점유 국가들의 뒤를 이어 낮은 수준이었던 10위(3.5%)였지만, 2013년에는 3단계 도약한 7위(3.6%)를 기록하며 10위를 점한 일본(3.3%)을 앞서고 있다. 한·페루 FTA 발효 1년 전(2010년 8월~2011년 7월) 페루의 수입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3.64%로

02  
주한 페루 한국대사관이  
셋방설이를 끝내고 지난해  
11월 단독건물을 매입한 뒤  
개관식을 갖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올해 4월  
페루에서 40개 신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 공동체들과 체결한 14개의 FTA 영향으로  
수출 및 시장점유 경합 혹은 경쟁은 점차 치  
열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경합과 경쟁은 다양한 혹은 다른 영  
역(예를 들어, 문화, 환경 분야 등)에서 한·페  
루 관계 발전의 강화를 통해 극복해 가야 한  
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하게 양국 간의  
교역량 증가, 우리나라의 자원협력 FTA 활용  
이라는 시각에서 성과가 있었던 한·페루 FTA  
3년이었다면 미래의 또 다른 3년은 이를 더욱  
공고히 해 감은 물론 미래 다른 국가들과 경  
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 전략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❷

일본(3.77%) 보다 뒤지고 있었으나, FTA 발  
효 1년 후(2012년)에는 3.88%로 증가해 일본  
(3.60%)보다 앞서기 시작했다. 일본의 점유율  
감소는 2010년 3월 중국·페루 FTA 발효에 이  
어 2011년 8월 한·페루 FTA가 발효되면서 시  
장선점 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  
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도 나타나고 있  
는 현상이다.

### 경제협력 등 새로운 전략 모색할 때

페루는 영토가 한반도의 6배 크기이며, 인구  
는 3,000만 명이 넘어 약 1,700만 명인 칠레  
보다도 많다. 마주픽초로 상징되는 잉카문명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자원들을 시작으  
로 은, 아연, 주석, 구리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자연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다. 에너지 및 광물 관련 공기업·  
사기업, 건설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  
라 기업들이 이미 페루의 자원개발 분야 및  
소비시장에 대규모 수출과 투자를 진행해 오  
고 있다. FTA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보호수  
준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제거되고 있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및 국제협력  
도 더욱 다양해지고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경제발전경험 지식공유(KSP) 협력, 국제개발

04  
포스코건설이 건설  
중인 페루 칼파  
복합화력발전소.





## 한국 농업의 경쟁력! 애플수박에서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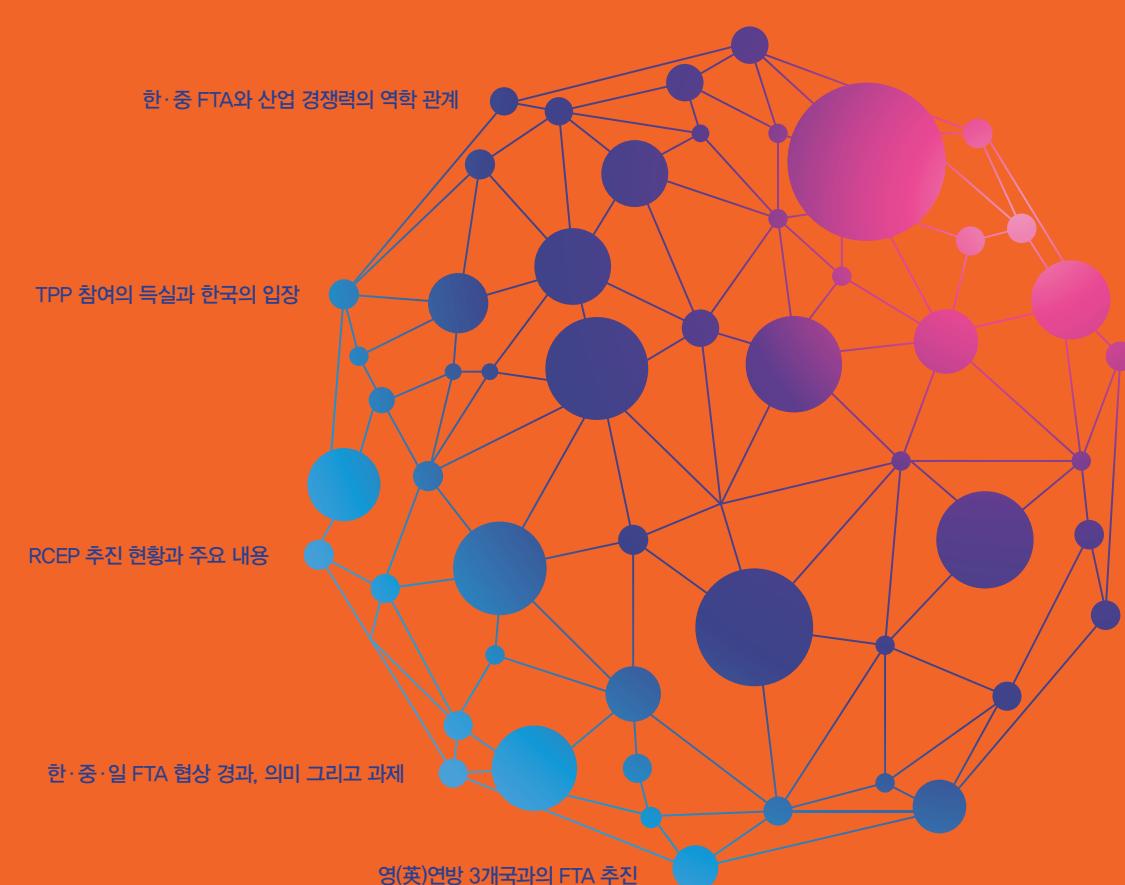
박인규 애플수박농장(주식회사 위드) 대표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는 제조업의 원리는 농업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보다 자세한 애플수박 스토리는 지난 호 참조)

# Current Negotiating FTAs of Korea

## 협상 중인 주요 FTA를 진단하다



### INDEX

-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P4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

한·중 FTA와  
산업 경쟁력의  
역학관계

중국의 급부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다. 중국과 함께 성장하고 중국의 내수시장을 우리의 시장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낙관론과 함께 중국의 막대한 경제력에 치이고 말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 FTA 체결이라는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서서 이러한 낙관론과 비관론은 점점 더 베일을 벗어가며 각자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 FTA로 한·중 기술 역전 지연... 그 사이 산업구조 강화해야



▲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보다 앞선 산업분야의 경쟁력은 비발효시보다 오히려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7월 14일 한국에서 열린 한·중 FTA 제12차 협상에 나선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오른쪽)과 왕세우원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이 악수하는 모습.



과연 우리가 기대하듯이 중국이 우리의 시장이 될 것이며, 과연 우리가 우려하듯이 중국의 경쟁력이 우리를 추월하고 말 것인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FTA 체결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단 '산업 경쟁력'이라는 분석틀로 문제를 풀어보자. 긍정론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에서 멀어지는 산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환원된다. 반면 비관론은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이미 우리에게 근접해 있으며 우리가 중국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으로 환원된다. 총론적으로 보면 현실은 이 두 가지 시각 사이의 어디엔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각론적인 답은 각 업종에서 발로 뛰고 있는 기업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스마트폰 기술이 삼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둘,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들은 아직 엔진을 설계 생산하는 능력이 없다는 둘, 여러 가지 각론들이 업종별로 존재할 테지만 여기서 그것들을 나열하거나 개괄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현실은 쉽게 바뀌기 때문이고, 더 중요하게는 그런 현실을 바꾸는 능력은 기업인들에게 있지 필자와 같은 연구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단, 한·중 FTA라는 주제 곁에 머물고 있는 연구자로서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이다. "한·중 FTA는 산업 경쟁력의 역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

### 지금 경쟁력 뒤쳐진 업종이 FTA로 영향 받는다

이러한 지연의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한·중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기보다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쪽을 택한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중국에 생산하는 이유는 비용이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세가 철폐된다면 중국 현지 생산의 가격 메리트가 줄어든다. 그런 이유로 중국 현지 생산이 상대적으로 줄게 되면, 생산기술의 이전도 줄게 되고 경쟁력의 역전은 덜 발생하게 된다.

둘째, 중국에서 우리 제품의 원가를 낮춤으로서 중국 업체들의 부품·소재 개발 유인을 감소시킨다. 현재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절반가량이 부품·소재다. 이들의 수요처는 중국기업일 수도 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일 수도 있다. 그런데 부품·소재는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분야가 아니고, 따라서 브랜드 충성도가 형성되기 어렵다. 즉, 부품·소재는 가격대비 성능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경쟁 제품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사소한 계기로도 전면적인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생긴 부품의 빈자리는 재빨리 일본의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의 것으로 대체됐다. 생산을 멈출 수 없는 기업인은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대체품을 찾게 되고 가격과 성능이 웬만큼 받쳐준다면 대체품을 채용하게 된다. 그리고 한 번 바뀐 대체품에 의한 생산은 좀처럼 원래로 돌아오지 않는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이렇거늘 하물며 가격과 성능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부품은 가차 없이 대체될 수 있다.

즉, 부품·소재의 비교 우위라는 것은 매우 섬세하게 작동한다. 이러한 섬세한 메커니즘에서 관세의 철폐는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납품업체의 부품을 선호할 수 있다. 성능대비 가격 때문 뿐 아니라, 이

전가격(移轉價格) 구조가 형성돼 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시'로부터 자유로운 중국 기업들은 훨씬 더 쉽게 한국 부품을 다른 무엇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부품의 가격대비 성능이 더 좋다면 그것을 쓸 것이다. 관세가 없어지는 만큼 더 많이 더 오래 쓸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아직' 앞서 있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 억제와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한국의 비교우위가 '좀 더' 베틀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쟁력이 '이미' 한국을 추월한 분야라면 어떨까? 즉, 성능과 가격에서 경쟁력은 이미 사라졌는데 관세 장벽에 힘입어 국내 시장에서 연명하고 있는 한국 제품이 있다면 말이다. 이러한 분야는 FTA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게 된다. 즉 FTA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반한다.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다.

### 합의된 개방수준으로 농업 보호는 가능

여기까지가 산업 경쟁력과 FTA의 역학관계이다. '이미' 추월당한 분야보다 '아직' 앞서 있는 분야가 많다면, FTA는 대체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즉, 한·중 FTA는 한국의 우위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지시켜 준다.

단, 단순히 경쟁력 논리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그렇다. 식량주권, 먹거리의 안전성 그리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농업과 농민의 정서적 가치 등을 염두에 둔다면 경쟁력 논리로 농업을 구조조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2013년 9월, 기본지침(modality)에 대한 합의에서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은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으로 합의됐다. 이 정도면 한국의 거의 모든 농산물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정작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산업의 파워 게임이 기술의 진보에서뿐만 아니라 생산 설비의 확충에서도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만약 범용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중국이 마음먹고 생산량을 늘리면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석유화학 소재 같은 것이 그렇다. 현재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경쟁력이 앞서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수요가 워낙 커서 아직 자급을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중국의 자급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공세품목 리스트를 신중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❶

2014년 7월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발효되었거나 협상 중에 있는 FTA는 총 385건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지역 통합형 FTA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 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협상이 구체화된 유일한 다자간 FTA로, 미국이 구상하는 APEC 전역의 자유무역지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협정의 내용도 기존 FTA의 관세철폐 중심에서 투자, 기술, 자원, 환경, 정책 등 통상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의 표준으로 부각되고 있다.

## 글로벌 통상질서 주도 예상... TPP 협상 소홀히 할 수 없어



### TPP 협정 국제통상의 표준으로 부각

2005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은 2015년까지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P4협정에 서명하였고, 이 협정은 2006년에 발효됐다. 소규모 협정이었던 P4는 2010년 3월 미국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TPP로 확대됐다. 호주, 페루, 베트남(2010년)의 협상 참여 이후, 말레이시아(2010년), 멕시코, 캐나다(2012년)가 동 협상에 합류했고, 일본(2013년)을 마지막으로 현재 총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협상 과정을 보면, 2013년 12월, 2014년 2월과 5월 싱가포르에서 TPP 각료회의가 열렸고, 지난 7월 캐나다에서 수석대표회의가 개최되는 등 조속한 타결을 위해 2~3개월 간격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며 광범위한 분야를 협상 대상으로 하는 협정이다. 향후 세계경제질서는 TPP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올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 후 기자간담회 모습.

TPP 참여국의 경제규모는 2012년 기준 세계 GDP의 39%, 한국의 대TPP 참여국 수출은 2012년 기준 총수출의 32%(총수입의 39%)를 차지한다.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며 광범위한 분야를 협상 대상으로 하는 협정이다. 기존 FTA의 기본 요소인 상품·서비스 무역 이외에도 비관세분야(투자, 경쟁, 지재권 등)와 새로운 분야(노동, 환경 등)를 포함한다. 또한 TPP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거대 경제권 간 포괄적 경제협력 중 유일하게 구체화된 협정으로, 향후 세계경제질서는 TPP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중심의 성장국가인 한국이 TPP 협상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배경이기도 하다.

### TPP 참여는 우리 교역에 긍정적

한국은 TPP 참여로 제조업에서는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 참여국과의 무역에서 한국 제조업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평균 관세수준도 낮아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다. 2013년 기준으로 TPP 참여국에 대한 우리 제조업 무역은 18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원산지누적 등의 비관세분야는 제조업 분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누적이란,

역내무역 증진을 위해 자국산뿐만 아니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생산된 것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TPP 12개국이 각자 양국 간 FTA를 체결할 경우, 총 66개의 원산지규정이 마련되어 각각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TPP의 경우, 통합된 하나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된 원산지 규정이 회원국의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TPP 협상에 참여한다면, 우리 기업의 관심 품목에 유리하도록 원산지 누적기준 협상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무역원활화, 기술무역장벽 해소 등의 비관세장벽 완화는 국내 기업 및 제품의 TTP 지역 내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반면, 우리의 TPP 참여로 인한 대일본 관세철폐는 대일 무역 적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관세철폐로 인해 대일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화학, 일반기계 등의 업종은 국내시장에서 미국, EU의 경쟁력이 높아 대일 무역적자의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다. 한편, 개도국은 공산품의 장기 관세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는 승용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반대하고 있어,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효과는 줄어들 가능성성이 있다. 또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신규 체결국인 멕시코, 뉴질랜드 등에 대한 수출증가를 통해 대일 무역적자 효과의 상당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속한 참여로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수출중심인 한국의 경제성장 구조를 감안할 때 통상질서의 변화를 주도하는 TPP 협상에 참여해 최대한 우리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TPP 연내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철폐 장기화 주장과 미국·호주의 승용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 반대는 한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협상에 참여해 한국에게 유리한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타결된 협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내 피해·취약 제조업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TPP 참여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종의 상당부분은 원천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이다. 이를 업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강화 등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무역구제 및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등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❶

| 전통적 FTA | 1  | 상품시장접근                    | 상품교역시 부과되는 관세의 철폐 및 인하 등             |
|---------|----|---------------------------|--------------------------------------|
|         | 2  | 원산지규정                     | 관세 감면의 대상인 '원산지 품목' 인정 기준과 증명 제도 등   |
| 무역원활화   | 3  | 무역규칙의 투명성 제고와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                                      |
|         | 4  | 서비스 교역                    | 서비스 교역시의 수량규제 금지, 무차별 원칙 등을 제정       |
|         | 5  | 상용관계자의 이동                 |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 체제 절차의 간소화              |
| 비       | 6  | 금융서비스                     | 국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허용                 |
|         | 7  | 전기·통신 서비스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인프라에 대한 공평한 접근기회 부여       |
|         | 8  | 위생식물검역(SPS)               | 식품 안전 확보와 동식물의 질병 방지조치 관련 규정 마련      |
|         | 9  | 무역의 기술적 장벽(TBT)           | 제품의 안전성 및 환경 기준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설정     |
|         | 10 | 무역 구제조치 (trade remedies)  |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 |
|         | 11 | 정부조달                      | 공공사업 발주 규칙                           |
|         | 12 | 지식재산권                     | 모방품, 해적판 단속                          |
|         | 13 | 경쟁 정책                     | 카르텔 방지를 위한 경쟁법, 정책의 강화, 정부간 협력 등     |
|         | 14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 환경 및 룰 장비를 위한 원칙 등             |
|         | 15 | 투자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무차별 원칙, 투자 분쟁해결 절차 등     |
|         | 16 | 환경                        |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 금지             |
|         | 17 | 노동                        |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완화 금지             |
|         | 18 | 제도적 사항                    | 협정 운용 관련 기관 설치 및 기간의 권한 등            |
|         | 19 | 분쟁해결                      | 협정해석의 불일치에 따른 체결국간의 분쟁 해결 절차         |
|         | 20 | 협력                        | 협정합의 사항의 이행체계가 불충분한 국가에 대한 지원        |
|         | 21 | 협상분야간 포괄사항                | 복수의 협상분야에 포함되는 규제로 인한 무역 장애 방지       |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3),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R42694, p.19 참조

\*필자 개인의 의견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CEP  
추진 현황과  
주요 내용

최근 가장 구체화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로는 RCEP 협상과 TPP 협상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RCEP의 경우 그 시작이 1990년대 말 동아시아 경제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협력, 나아가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 역내 무역규범 일원화되면 한국기업의 활용 여지 커

1990년대 말 시작된 경제통합 논의는 구체화되어 ASEAN+3(한·중·일) 혹은 ASEAN+6(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형태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RCEP 역내에서 양자 FTA가 다수 추진되고 미국 주도의 TPP 협상이 본격화되며 RCEP도 급물살을 타게 된다. 결국 2012년 11월 협상을 선언하며 공식적으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RCEP은 현재 5차례 협상을 개최했고 2015년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이견이 걸림돌

우리나라에 RCEP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RCEP이 기준의 양자 FTA와 달리 16개국에 달하는 폭넓은 시장을 통일 규범으로 묶고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중간재 수출이 많고 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한 우리의 현실에 부합한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상품의 3분의 2 가량이 상대국에서 바로 사용되거나 가공단계를 거쳐 사용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된다는 의미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중간재 수출 비중 58.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중국(39.2%)이나 베트남(21.6%)은 중

간재 수출 비중이 훨씬 낮고 최종재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은 해외투자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를 수출하고 해외 투자처인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수출하는 사업 구조를 영위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가운데 41.6%(2013년 말 기준)가 RCEP 지역에 투자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곳곳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RCEP을 통해 통일된 누적 원산지 기준 등의 동일한 규범이나 무역자유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 기업의 활용 여지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연구소(RIETI) 등의 연구에 따르면 RCEP의 GDP 효과는 우리나라가 0.29~1.15%로 16개국 가운데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크고, 일본(0.03~0.06%), 중국(0.15~0.22%) 등 경쟁국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RCEP 협상은 올 8월에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상품개방 방식 등에 합의하고 이후 본격적인 품목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5년 협상타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장관 회의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개방을 주장하는 한국, 일본, 호주 등과 개방 예외 및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주장하는 ASEAN과의 입장차이가 커 협상 진전이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RCEP 협상의 타결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간 합의가 중요하고 한·중·일 합의를 위해서는 한·중 FTA 합의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❶



한·중·일 FTA 협상 경과, 의미 그리고 과제

한·중·일 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의아스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현재 한중일 3국은 2012년 5월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지 못 할 정도로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 15억 명, 15조 달러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자

하지만 실제로 3국은 2013년 3월 제1차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이후 4차례 개최된 협상에서 11개 분야의 작업반 회의 그리고 4개 분야의 전문가 대화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4년 8월에는 중국에서 제5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3국 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는 분야는 한·중·일 FTA뿐만은 아니다. 올해에만 벌써 3국은 공동의 관심사인 환경, 원자력 안전, 물류 분야에서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으며 5월에는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기도 했다. 언론을 통해 역사문제나 영유권분쟁 등 갈등적 요소가 주로 부각되고 있으나 3국 간 실질적인 협력은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

### 정치적 갈등에도 3국 협력 지속되고 있어

필자는 한·중·일 FTA가 지니고 있는 3가지 의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한·중·일 FTA는 3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3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이다. 당연한 결과로 비취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3국이 9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한 공동연구 후에 얻은 최종 결론이다. 3국의 역내무역비율은 약 24%로 EU의 64%,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40%와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3국이 FTA를 타결하게 되면 상품 및 부품뿐만 아니라 기술, 서비스 및 인력분야 등 다양한 자원이 원활하게 이동하게 됨으로써 인구 15억 명, GDP 15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공동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공동시장은 3국 산업 간의 보완관계를 강화시켜주며 더 큰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더 폭넓은 경제협력

을 가능케 함으로써 3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 3국이 아태지역에서 유일하게 FTA 공백 지대임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는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강화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제강국인 3국이 FTA를 통해 무역원활화, 원산지규정, 지적재산권 등 각종 통상 쟁점에서 높은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되면 RCEP, TPP와 같은 역내 FTA와 더불어 아태지역의 시장통합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한·중·일 FTA가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이것이 곧 3국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환경보호, 에너지 안보 및 인프라 개발 같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 지역협력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논의는 한·중·일 3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몽골,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동북아 지역의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한·중·일 FTA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거대한 비전을 실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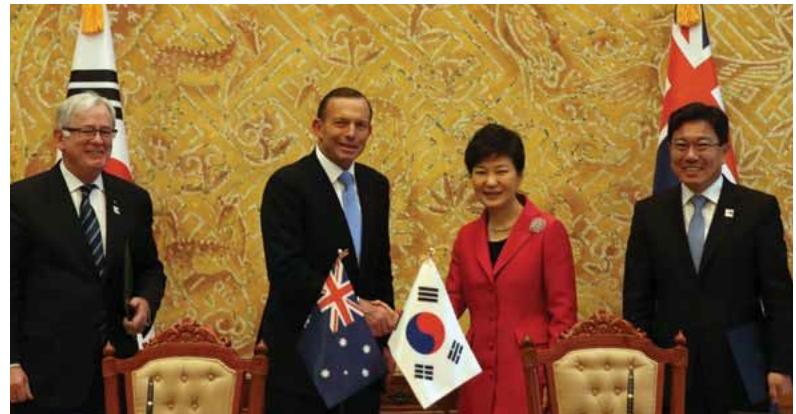
물론 3국은 국내적으로 민감한 산업 구조조정 문제 및 정부조달이나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 과제로 인해 어려운 협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색된 양국 관계가 협상 최종 단계에서 필요한 정치적 판단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필자는 3국이 이러한 비전을 모두 공유하고 조소한 시일 내에 한·중·일 FTA를 타결함으로써 정치적인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아가 지역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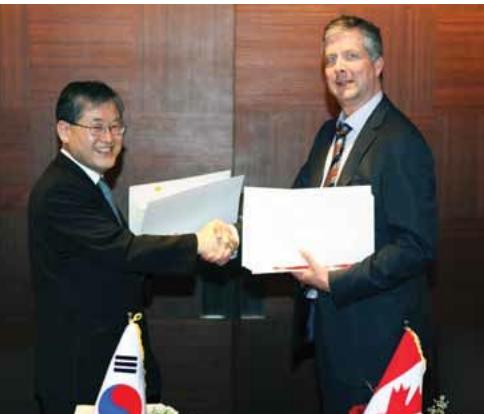
영(英연)방  
3개국과의  
FTA 추진

한·중 FTA를 비롯해 RCEP, TPP와 같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FTA 추진이다. 이들 3개국은 영(英)연방에 속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와 FTA 협상이 중단되었다 재개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경제규모나 구매력, 다른 나라와 경쟁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 시장인 점도 공통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구매력 높은 시장…한·중·일 경쟁 치열한 곳



▲ 한·호주 FTA: 2014년 4월 8일 정식 서명



▲ 한·캐나다 FTA: 2014년 6월 12일 가서명

우리가 경제대국 가운데 FTA를 발효하지 않은 것은 중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 캐나다, 호주 순이다. 이 가운데 중국과의 FTA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고 일본과는 한·중·일 FTA 및 RCEP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과는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 대국 가운데 FTA를 발효하지 않은 것은 캐나다, 호주로 귀결된다. 구매력 측면에서도 GDP 상위 12개국 가운데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것이 호주, 캐나다이다. 뉴질랜드도 경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1인당 GDP가 3만8,000달러에 달하는 구매력 높은 시장이다.

경쟁측면에서도 이들과의 FTA는 선점효과를 기대해 볼만한다. 캐나다의 경우 한·중·일 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협상을 마친 상태로 상당한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호주의 경우 중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FTA에 서명(한국, 일본 모두 2014년 4월)한 상태이다. 호주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위해서는 일본에 앞서 한·호주 FTA를 발효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의 경우 중국과 FTA가 이미 발효(2008년 10월)된 만큼 FTA를 통해 중국과 동일한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한·호주 FTA: 공산품 수출 기대, 한·일 경쟁 치열

본래 2009년 5월 개시된 한·호주 FTA는 이듬해인 2010년 5월까지 5차례 협상을 개최했으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 상품분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장기간 협상이 지연되었지만 최근 논의가 되살아나며 2013년 11월

협상이 재개됐고 12월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과 호주는 가서명을 거쳐 2014년 4월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처럼 협상 재개와 타결이 가능했던 것은 핵심 쟁점에 대해 양국의 입장차를 좁혔기 때문이다. 양국은 ISD 도입에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상품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했다. 호주는 5년 내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4.3%, 수입액 기준 94.6%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 관세가 즉시 혹은 3년 내에 모두 철폐되는 만큼 큰 폭의 수출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에 우리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쌀 등은 양허제외하고 이외에도 계절관세, 농산물세이프가드, 저율관세할당 등 다양한 보호수단을 확보했다.

이처럼 FTA를 통해 호주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일·호주 FTA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호주 FTA도 2014년 7월 협정문 서명을 마치고 발효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를 비롯해 호주 시장에서 일본과 치열하게 경합중인 만큼 한·호주 FTA 조기 발효에 힘 쓸 필요가 있다.

### 한·캐나다 FTA: 9년만의 협상타결, 선점효과 기대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은 협상 개시 이후 무려 9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2008년 3월까지 13차례 협상을 개최했지만 상품개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장기간 중단된 한·캐나다 FTA 협상은 2013년 11월 협상이 재개됐고 협상 타결을 거쳐 2014년 6월 가서명을 마쳤다. 이제 공식서명과 국내절차를 거치면 협정 발효가 가능한 상태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것은 캐나다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FTA 선점효과다. 경쟁국인 중국은 캐나다와 FTA 논의가 없고, 일본



▲ 한·뉴질랜드 FTA: 2013년 12월 3일 협상 재개 합의(사진) 2014년 6월 8~13일 제7차 공식협상 개최

### 한·중·일과 주요 경제대국과의 FTA 추진현황

| 순위 | 국가명  | 평균GDP<br>(십억 달러) | 1인당GDP<br>(달러) | FTA 추진현황   |            |            |
|----|------|------------------|----------------|------------|------------|------------|
|    |      |                  |                | 한국         | 중국         | 일본         |
| 1  | 미국   | 16,245           | 51,709         | 발효         | -          | TPP        |
| 2  | 중국   | 8,229            | 6,078          | 협상 중       | -          | 한·중·일 RCEP |
| 3  | 일본   | 5,938            | 46,530         | 한·중·일 RCEP | 한·중·일 RCEP | -          |
| 4  | 독일   | 3,428            | 42,569         | 발효         | -          | 협상 중       |
| 5  | 프랑스  | 2,613            | 41,223         | 발효         | -          | 협상 중       |
| 6  | 영국   | 2,484            | 38,999         | 발효         | -          | 협상 중       |
| 7  | 브라질  | 2,248            | 11,437         | 검토         | -          | -          |
| 8  | 이탈리아 | 2,014            | 33,915         | 발효         | -          | 협상 중       |
| 9  | 러시아  | 2,004            | 14,016         | 검토         | -          | -          |
| 10 | 인도   | 1,859            | 1,515          | 발효         | RCEP       | 발효         |
| 11 | 캐나다  | 1,821            | 52,489         | 가서명        | -          | 협상 중       |
| 12 | 호주   | 1,555            | 67,856         | 공식서명       | 협상 중       | 공식서명       |
| 56 | 뉴질랜드 | 170              | 38,385         | 협상 중       | 발효         | TPP        |

자료: IMF, 한국무역협회, 각국 정부 자료

도 현재 양자 FTA 혹은 TPP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우리가 한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면에서도 한·캐나다 FTA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해 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10년내 98%(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전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를 비롯해 자동차부품, 가전, 섬유 등 주요 수출품의 캐나다측 관세가 모두 3년내 철폐되게 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농산물 보호를 위해 양허제외, 10년 이상의 장기간 관세철폐, 농산물세이프 가드 등의 수단을 마련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유연탄, 원목 등 원자재는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FTA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한·뉴질랜드 FTA: 서비스·투자협상으로 뒷받침 필요

한·호주 FTA와 마찬가지로 한·뉴질랜드 FTA도 2009년 협상이 개시되어 2010년 5월 4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계속 지연되어 오던 한·뉴질랜드 FTA는 2013년 12월 양국 합의를 바탕으로 협상 재개의 물꼬를 뚫고 2014년 2월 3년여 만에 5차 협상을 개최하게 된다. 이후 6월 7차 협상까지 개최하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뉴질랜드 시장규모가 크지 않지만 상품분야에서 2008년 중·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의 불리한 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통카드 시스템이 뉴질랜드에 수출되거나 우리기업이 뉴질랜드 철도차량 공급에 성공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❶



하이메 포마레다 주한 페루 대사

## 페루 또한 개방적 무역 추구... 한국의 라틴 아메리카 교두보될 것

하이메 포마레다(Jaime Pomareda) 주한 페루 대사는 2012년 7월 여수 엑스포에 페루 외교부를 대표해 참가한 것이 첫 한국 방문이었다. 그 해 12월 5년 임기로 주한 페루 대사로 부임했다. 한국은 처음이었지만, 페루 외교부에서 이코노믹 프로모션(굳이 번역하면 경제촉진국 정도) 총국장을 맡으며 예전부터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적응은 어렵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한·페루 FTA 발효 3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FTA를 어떻게 보십니까? 양국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발효 초기 단계인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페루의 대한국 수출은 2010년 8억9,600만 달러(이하 USD)에서 2013년 15억4,10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페루 수출도 9억5,100만 달러에서 14억7,0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엄청난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무역인들은 깊은 관심과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FTA는 상품 교역 증가뿐만 아니라 양국 투자자들에게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고 있으며, 또한 금융,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이슈를 규정하며 양국 협력의 좋은 바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양국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반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한국과 페루 양쪽 모두 새로운 시장에서 판촉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기업이 페루에서 연중 벌어지는 각종 박람회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또한 양국의 기업과 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 협회들끼리 밀접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한국의 위생검역을 해결하면 양국의 이익 증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적절한 교역을 막는 장애물은 몇 년 내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FTA 발효 이후 페루 시장에서 판매가 늘고 있는 한국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한국에서 판매가 늘어난 페루 제품도 있나요?**

페루에서 한국산 자동차, 전자제품, 시멘트, 플라스틱 제품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한편으로 페루의 가스, 광물의 대한국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페루의 왕오징어, 커피, 바나나, 수산물, 포도, 섬유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페루의 알파카 섬유로 만든 하이엔드 패션 제품과 액세서리, 보석류, 식품 등은 한국에서 환영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의 첨단제품들도 페루에서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페루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페루 FTA로 어떤 이점을 얻고 있습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가격경쟁력을 갖춘 한국 첨단 제품을 페루 소비자들이 살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한 이점입니다. 이런 가시적인 것 외에 페루 국민들이 FTA를 통해 한국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페루 학생들이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 유학 시 한국이 적절한 고려 대상이 될 것 같네요. 한편 이런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는 향후 중복 과세 해결, 상호 운전면허 인정을 가능케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양국은 상대국 노동자의 사회보장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FTA가 교역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적인 예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양국의 교역이 단지 상업적 이익 측면에서만 고려될 수는 없겠지요. 또 다른 규칙과 제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페루와 한국의 교역량이 늘면서 대한항공은 리마와 인천을 오가는 화물기를 주 2회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업 수요와 관광 수요가 늘어나면 곧 여객 노선도 생기겠지요.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근 몇 년 사이에 페루는 한국 음악밴드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진출하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들은 페루 젊은이들이 한국의 화장품, 스낵, 음료, 한국어 배우기에 대한 수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는 또한 젊은이들이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한국행을 고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 학생들 또한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 페루 어학연수를 고민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서로 다른 삶을 겪어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문화적 교류는 향후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양국을 더욱 가깝게 만들 겁니다.

**페루 또한 한국처럼 FTA 확대에 열심인데요,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습니까? 페루가 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페루는 19개의 FTA에 서명을 했고, 2개의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TPP를 포함해 4개 이상의 FTA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FTA 수는 국가·경제공동체 중복 여부에 따라 국내 연구기관이 파악한 것과 다소 다를 수 있음). 95% 이상의 페루 수출자들은 FTA를 반기고 있습니다. 페루는 상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의 협력, 투자, 이해관계를 포함해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페루는 지역 통합, FTA 네트워크와 FTA 파트너의 경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를 들면, 페루의 교역 네트워크, 제도, 법적 인프라는 한국이 라틴 아메리카 비즈니스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억6,100만 소비자, 15조 달러 GDP 시장으로 커지게 될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효율적 교두보로서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교역 기회를 연결하며 자유 무역, 지역 통합,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❷

### 하이메 포마레다(Jaime Pomareda) 대사 약력

- 1953년 페루 리마 출생
- 1974년 리마 카톨릭 대학교 졸업(인문학 전공)
- 1976년 페루 외교 아카데미 졸업(국제관계학 전공 및 외교관 자격 획득)
- 1977년 페루 외교부 발령
- 1979~85년 주미 페루 대사관 근무
- 1988~93년 주캐나다 페루 총영사
- 1995~98년 주필리핀 페루 대사관 대리공사
- 2004~09년 주홍콩&마카오 총영사
- 2010~12년 페루 외교부 이코노믹 프로모션 총국장
- 2012년 12월 7일 주한 페루 대사 부임



글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한·중·일 FTA 삼국지:

## 경제통합의 정신을 살려야 성공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는 다소 뒤늦었지만 FTA 체결 레이스에 뛰어든 후 대단히 바쁜 걸음으로 달려왔다. 많은 난관과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의지를 가지고 FTA를 추진해 왔으나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자부해도 좋을 것 같다.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모두를 어렵게 만들었던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타결했고,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양대 축이라는 EU와도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이 양대 FTA보다는 수준이 다소 낮지만 주요 교역국가들인 ASEAN, 인도, 터키 등과도 FTA를 체결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오랫동안 끌어오던 호주, 캐나다 등과도 전격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타결했으나 이제 실질적으로 남은 숙제는 이웃 국가들인 중국, 일본과의 FTA다.

### 중국, 일본의 사정은 어떠한가?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FTA 레이스에 참여한 후 최근까지 주로 아시아 국가들, 특히 ASEAN 개별국가들을 대상으로 FTA를 체결해 왔다. 그러다가 ASEAN 전체와의 공동 FTA도 체결하더니 인도와도 FTA를 체결해 아시아 지역에서는 결국 우리나라와 비슷한 레이스를 펼쳐온 셈이다. 중국도 비슷하게 아시아 지역을 중시하여 왔다. 우선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이른바 중화권 국가들과 특별한 FTA를 체결하였고, ASEAN, 파키스탄, 뉴질랜드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들 두 나라의 FTA 체결전략을 보면 어딘지 중국 전국시대에 보던 합종연횡 전략을

떠오르게 한다. 두 나라의 FTA 전략은 ASEAN 국가들과의 FTA 체결 태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FTA의 실질적 내용보다는 '주변국들을 엮어가는' 데 중점을 두어 온 점에서 소진(蘇秦)<sup>1)</sup>이 주장한 합종전략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중국이 최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주창하는 주도국가라는 점은 그 전략의 냄새를 더욱 진하게 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전략은 하나하나 개별국가들과 '실질적 시장개방을 확보'하려는 목적의 FTA를 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장의(張儀)<sup>2)</sup>가 주장한 연횡전략의 냄새를 짚게 풍기고 있다. 그 정점은 역시 일본이 전격적으로 아시아 지역통합을 넘어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라는 큰 틀에 뛰어들면서 중국의 합종전략을 거의 무력화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두 이웃나라의 FTA 전략을 염두에 둘 때 어떤 전략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옳을까?

### 어떠한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추구해야

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가장 중요한 두 FTA, 즉 한·미 FTA, 한·EU FTA들의 특징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높은 수준의 FTA란 거의 모든 품목들의 관세들을 '예외 없이' 그것도 가능한 한 '조기'에 철폐하는



◀ FTA는 원래  
이웃나라들끼리  
'지역경제통합'을  
추구하는 도구로  
태어났다.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지금 남은  
숙제는 이웃 국가들인  
중국, 일본과의 FTA다.

것을 의미한다. 예로 든 두 FTA에서 우리나라는 비록 쌀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강조해 예외로 했지만 그 외 모든 품목들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했고 농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들의 관세를 비교적 조기에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두 FTA 파트너들도 모든 품목들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기로 한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아쉽게도 ASEAN, 인도와의 FTA가 그 잠재적 가치를 다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예외가 많고, 장기애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FTA를 체결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합종전략의 냄새를 풍기는 중국은 이러한 FTA를 추진하는 것을 거의 당연시하고 있다. 즉, 자국의 중요한 산업들을 한국을 비롯한 FTA 파트너들의 강한 산업으로부터 상당 기간 보호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셈인데, 우리나라가 이 점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이미 한·중 FTA에서는 우리나라가 농산물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전략에 동의해 주었지만 한·중·일 FTA, RCEP 등에서는 '높은 수준의 FTA'의 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

### 또 하나의 과제, 아시아 지역경제통합

다음으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의 '지역경제통합'에 신경을 쓸 데가 된 것 같다. 지금은 세계 주요국들이 이른바 '거대 경제권 사이의 FTA'들을 추구하고 있지만 (TPP, TTIP, 일본·EU FTA 등), FTA는 원래 이웃나라들끼리 '지역경제통합'을 추구하는 도구로 태어났다. 대표적인 거대 FTA인 EU,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이 그 좋은 예들인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WTO(세계무역기구)에서는

아직도 FTA 등을 통칭할 때 '지역무역협정(RT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칠레와의 첫 FTA를 제외한다면, FTA 추진 초기에 싱가포르, 일본, ASEAN, 인도 등을 FTA 파트너로 선정했고, 노무현정부 당시에는 '동북아중심국가론'까지 내세우면서 지역경제통합을 염두에 둔 FTA 추진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본이 암초가 되었다. 일본은 정치적 단계에서는 경제통합의 정신에 쉽게 힘의했다가 막상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 통합의 파트너라기보다는 일 대 일 협상 파트너로서 하나하나 거래하는 식의 자세로 바뀌어 버리면서 우리나라 협상단들을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필자가 참여해 본 바로는 한·중·일 FTA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자세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졌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함께 '지역경제통합'을 강조해 있는데, 이 기조가 한·중·일 FTA, RCEP 나아가 TPP의 장에서도 견지되기를 희망한다. 가능하다면 일본을 설득해 아시아 지역의 지역경제통합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런 필요성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일 FTA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신을 살린 한·일 FTA의 체결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FTA의 수준을 높이고 이 한·중·일 FTA가 지역경제통합의 초석이 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❶

1) 중국 전국시대의 정치가, 진(秦)나라를 두려워하는 신동의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며 6국의 연합으로 진에 대항하자는 합종설(合縱說)을 주창.

2)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의 모사. 연횡책(連衡策)을 주창하면서, 위·조·한 등 서로 잇닿은 6국을 설득, 진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관계를 맺게 하였다.

## 샌드위치패널 제조업체 일광메탈포밍

# 바이어들, ‘관세 환급+뼛속까지 한국산’에 환호

일반인들이 ‘샌드위치패널’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게다가 대형 화재사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다 보니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샌드위치패널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식이 문제다. 샌드위치패널은 산업현장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마법의 도구에 가깝다. 일광메탈포밍은 이 샌드위치패널 제조에 필요한 제조라인을 만드는 회사다.



일광메탈포밍은 샌드위치패널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샌드위치패널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을 것이다. 인천남동공업단지 내 본사(제작공장)에서 만난 주창우 무역부 대리는 취재진을 3층 쇼룸으로 데려갔다. 단면을 드러낸 다양한 샌드위치패널 샘플들이 가득하다.

샌드위치패널은 두 금속판 사이에 단열 효

과가 있는 충전재를 채운 것이다. 금속판이 평평하면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굴곡을 줘서 벽체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한다. 샌드위치패널의 가장 큰 장점은 공장, 창고, 차고 등의 간 이건물을 지을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이다. 주창우 대리는 “샌드위치패널이 없다면 콘크리트, 벽돌, 단열재를 사용해서 지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충전재로는 저가형의 스티로폼(EPS: Expanded Polystyrene)과 비교적 고가형인 난연폴리우레탄(PIR: Polyisocyanurate), 미네랄울(고유명사지만 일반명사처럼 통용됨. 엄밀히는 ‘광물섬유’임) 등이 있다. PIR과 미네랄울은 난연 등급에 따라 1~3시간의 내화 기능을 갖고 있어 EPS처럼 순식간에 불이 붙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를 쓰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어떤 샌드위치패널을 만드느냐는 고객사들이 일광메탈포밍의 제품을 구매, 설치한 뒤에 결정할 일이다.

### 설비 길이 최대 200m에 달해

샌드위치패널을 만드는 라인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원하는 형태로 철판을 성형하는 것과 두 장의 철판 사이에 단열충전재를 채우는 것이다. EPS용은 간단하고, PIR용과 미네랄울용은 복잡하다. 가장 긴 제품은 길이가 200m에 달한다. 가격은 제품에 따라 5억~50억 원 사이다. 남동공단의 일광메탈포밍 본사에서는 이 회사가 납품하는 기계 전체를 볼 수는 없었다. 각각의 모듈을 고객사가 구매해 설치를 하면 긴 라인이 완성되지만, 일광메탈포밍에서 미리 그렇게 설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일광메탈포밍은 이 분야에서 규모나 기술 면에서 국내 1위로 꼽히는 기업이다. 해외 수출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러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등 세계 60여 개국

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약 2,400만 달러에 달하며 올해는 3,000만 달러를 넘어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분야 또한 중국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으로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광메탈포밍은 이에 맞서 설계간소화, 부품 대량구매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FTA 관세인하를 통한 실질적 가격인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출품의 가격이 수십억 원대다 보니 관세 1%만 인하되어도 몇 천만 원이 절감된다.

### 직원들이 일일이 업체 방문

첫 FTA 활용은 2010년 시작됐다. 태국의 경우 해당 제품의 수출관세는 5% 또는 10%였으나,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첫 FTA 활용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제조설비에 들어간 부품(구매기준)만 해도 제품에 따라 1,000~3,000개에 달했고, 나사 하나까지 센다면 수 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주 대리는 “볼펜이나 깜 같은 단순한 제품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당시는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일일이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런 난관을 헤쳐 나가려면 무역부와 구매부의 실무직원 3명이 밭로 뛰는 수밖에 없었다. 공급업체들이 대부분 남동공단과 시화공단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당시만 해도 협력업체들은 FTA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던 때였다. 이를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해서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워낙 방대한 작업이다 보니 기관발급 주체인 상공회의소에서도 검토하는 데 수 주가 걸렸지만, 마침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EU FTA 활용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사내 TFT(태스크포스팀)를 만들고 ERP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회사가 FTA 활용 체계를 모두 갖췄다. 이후 기존 고객사들은 1년 이내 구매물품에 대해 한·EU FTA 소급적용을 받아 4~8%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특히 루마니아의 한 고객사는 계약 당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광메탈포밍이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이미 낸 15만 달러의 관세를 모두 돌려받게 되자, 감사의 인사와 함께 차후 추가 주문 의사를 밝혔다.

이 회사 무역부 임홍식 부장은 “FTA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과 더불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함으로써 ‘수입품을 단순화공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닌 ‘뼛속까지 한국산’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광메탈포밍은 샌드위치패널 제조설비를 제조하는 회사다. 단기가 수십억 원대다 보니 관세 1% 인하도 가격경쟁력에 크게 기여한다.

# 차(茶)

## : 은은한 향취에 담긴 한국의 전통

### 향의 중국, 색의 일본, 맛의 한국

커피가 서양 문화를 대표하는 음료라면, 차는 동양 문화를 대표한다. 유럽에 차가 전해진 것은 16세기의 일이지만, 동양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무려 기원전 3000년경부터다. 웬만한 문명의 시작에 견줄만한 탄생이다. 차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동양 문화를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차의 역사적 깊이 때문일 것이다.

동양에서 가장 차 문화가 발달한 것은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3국이다. 세 나라 모두 발음은 비슷하다. 한국어로도 '차', 중국어로도 '차', 일본어로도 '차'라고 한다. 미묘한 차이는 있겠지만, 알파벳 표기는 똑같다. 발음은 비슷해도 문화는 조금씩 다른데, 중국에서는 향을, 일본에서는 색을, 한국에서는 맛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이다. 차의 원산지가 중국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다. '차의 역사는 중국에 있다'는 말처럼 그 기원은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차는 처음 약용으로 사용됐다고 전해진다. 육우(陸)가 쓴 세계 최초의 차 전문 서적인 대경(茶經)에는 인류 최초로 차를 마셨다고 알려지는 신농씨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신농씨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 만 가지의 식물을 전부 먹어가며, 사람에게 맞는 식물을 찾으려 했다고 한다.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여러 풀을 직접 먹었는데, 때때로 독초에 중독되는 일도 있었다. 하루는 신농씨가 독초를 먹어 꿩꽁 앓고 있다가 주위의 풀을 하나 집어먹었는데, 이 풀이 해독작용을 해서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다반사(茶飯事)'.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처럼 예삿일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인에게 차를 마시는 것은 오래전부터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 그동안 커피에 밀려 전통차에 대한 관심은 다소 떨어졌으나, 때마침 분위기 바람은 전통차의 효능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며 전통차가 다시금 인기를 얻을 수 있게 했다.



▲ 한국의 차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외국인들.

이 풀이 바로 찻잎이었다. 설화에 가까운 이야기라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차의 역사가 약용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귀족들의 음료였던 차가 대중화된 것은 당나라 때다. 약용으로 사용되던 것이 기호 음료로 변한 것도 이 무렵이다.

한반도에 차가 전래된 것도 이 때다. 차가 역사서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다. 이것에 따르면, 7세기 초 신라 선덕여왕 때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9세기 신라 왕실에서 지리산 자락에 차밭을 운영한 것이 한반도에서 차가 확대된 계기가 됐다. 반면, 일본에 차가 전해진 것은 이보다 약간 늦은 9세기 초로 알려져 있다. 중국으로 유학했던 학승(學僧)이 귀국하면서 차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신라의 차 문화는 고려시대에 와서 꽃을 피웠다. 차는 더욱 대중화돼 왕실, 귀족 등 상류층뿐만 아니라 평민 사이에도 음용됐다. 차가 갖는 중요성도 더욱 커져,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식이나 제사가 있을 때마다 차가 등장했다고 한다. 이 때, 예를 갖춰 차를 올리는 예식이었던 '진다의식(進茶儀式)'은 꽤 까다로웠다고 전해진다.

흥미로운 점은 사법 판결과 차와의 관계다. 고려시대 왕들은 중요한 판결이 있기 전에 차를 마시는 의식을 치렀는데, 이를 통해 마음을 가다듬어 보다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법기능을 담당했던 사헌부에서도 매일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며 보다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불교가 융성했던 것도 차 문화를 더욱 깊

게 했다. 고려 승원(僧院)에는 '명전(茗戰)'이라는 풍속이 있었는데, 승려들끼리 차 우리기를 서로 겨루는 것으로 풍류의 극치였다. 고려 중기의 문인 이연종(李衍宗)은 "사미승, (차다루는)삼매의 날랜 솜씨(沙彌自快三昧手) / 백설 같은 다발(茶沫), 찻잔에 따르기를 그치지 않네(雪乳翻甌點不已)"라고 명전의 분위기를 전했다.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불교의 쇠퇴와 더불어 차 역시 인기가 시들해졌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며, 정약용·김정희 등 사대부와 혜장·초의·범해 등 승려들의 영향으로 부흥기를 맞았다. 특히, 초의가 완성한 초이차(草衣茶)는 차 문화 중흥의 토대인 음다총(飲茶屠)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됐다.

### 세계로 퍼지는 은은한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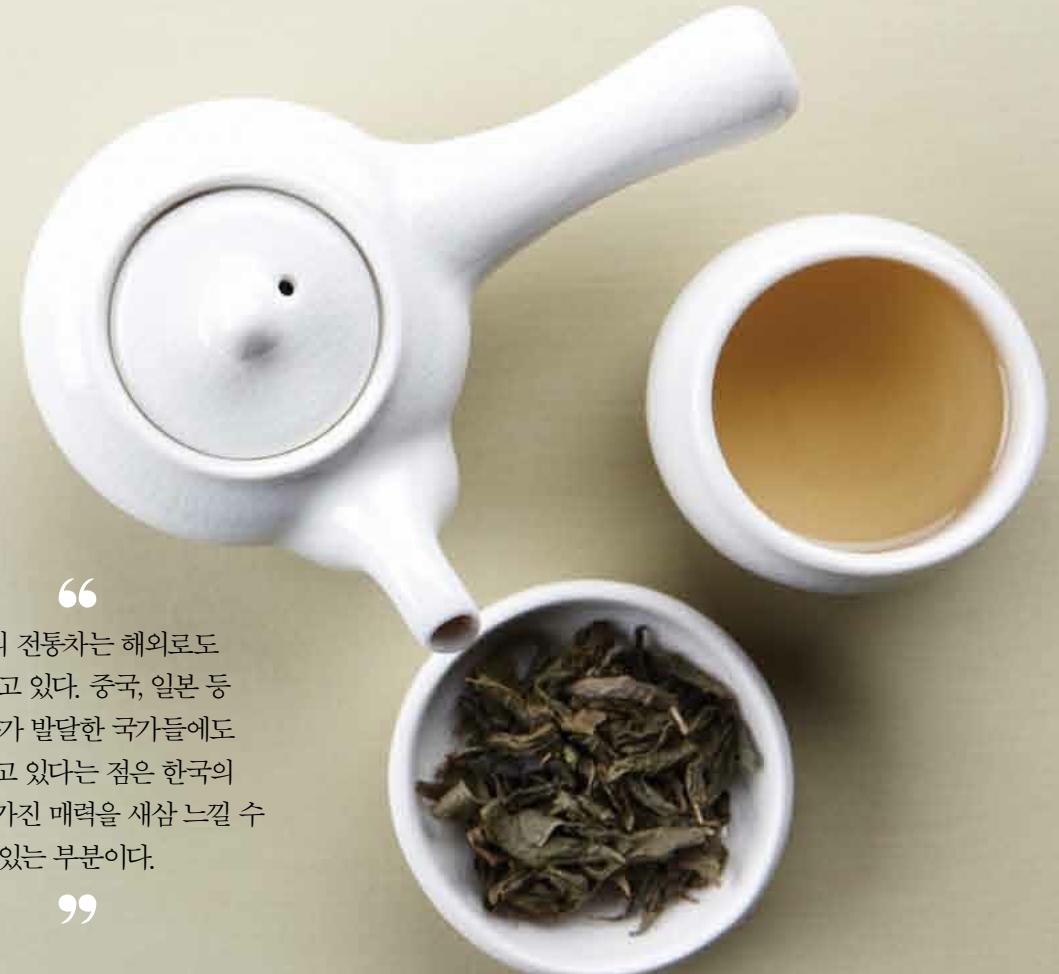
현재, 전통차는 그것이 오래도록 간직해온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커피에 밀린 나머지, 전통차는 점점 잊혀져가는 분위기였으나,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전통차가 가진 효능이 알려지면서 전통차의 재발견으로 이어졌다.

전통차 업계에서도 건강보조 음료로서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출시하며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실었다. 또한 현대식으로 단장한 전통차 카페들이 속속 등장해 젊은 세대들도 전통차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대추차·모과차·생강차·유자차 등 한국의 전통차는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차 문화가 발달한 국가들에도 수출되고 있는 점은 한국의 전통차가 가진 매력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 전통차 프랜차이즈 업체는 해외에 매장을 오픈하는 등 전통차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전통차에 대한 해외에서의 인지도는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통차의 해외 진출은 단순히 '수출'이라는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중문화가 이끈 한류 바람이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유행을 타지 않는 은은한 매력을 지닌 한국의 전통 문화가 알려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통차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할지 모른다.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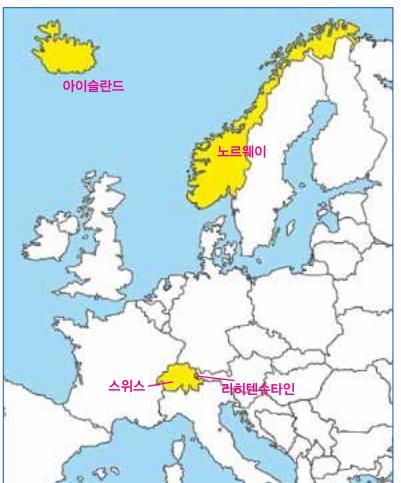
“  
한국의 전통차는 해외로도 수출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차 문화가 발달한 국가들에도 수출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전통차가 가진 매력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자유무역의 역사—⑦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FTA가 EU에 주도권 내어준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럽에 속한 모든 국가들은 모두 유럽연합(EU)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우산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그 거대한 우산 속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독자적인 FTA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바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형성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와 스위스이다.

EFTA에 속한 네 나라들은 총 GDP 약 1조 2000억 달러, 총인구 약 1,400만 명 정도로 시장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1인당 GDP가 5 만 달러가 넘는 부자 나라들로 전형적인 강소국들이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적인 국제금융 중심지로 많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스위스는 또한 의약, 기계류, 시계 부문에서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수산, 해운에 경쟁력이 있으며 노르웨이는 주요 산유국이기도 하다.



### EU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경제공동체

19세기에 이미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신대륙에서 만들어진 미합중국에 대응되는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예고했다. 그는 “신대륙에 미합중국을 만든 것처럼 역사가 오래된 유럽대륙에도 유럽합중국이 건설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차 세계 대전

미쳤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1951년 4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창설했다. 또한 1958년에는 로마조약에 근거해 대외공동관세의 설정과 생산요소의 이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영국은 당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식민지와의 특혜관계 문제 등을 이유로 선뜻 EEC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대신 영국은 EEC보다 느슨한 형태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창설을 주도했다.

마침내 1960년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이 영국의 뜻에 동조하여 ‘스톡홀름 협정’의 체결과 함께 EFTA를 창설했었다. 앞서 체결된 EEC는 관세동맹을 지향하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역외국에 대해

독자적인 관세 및 무역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다. 반면 EFTA는 자유무역협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회원국끼리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자 독립적인 관세 및 무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1961년 핀란드가 EFTA의 준회원국이 되었고, 1966년에는 EFTA 회원국간에 공산품 무역의 완전 자유화가 실현되었다. 1970년에는 아이슬란드가 EFTA의 회원국이 되었다. 반면, 1973년에는 덴마크와 영국이 EC에 가입하기 위해 EFTA를 탈퇴하였다. 영국은 EFTA 창설을 주도한 국가였으나 당시 영국의 교역에서 EC가 차지하는 비중이 EFTA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를 주시하던 영국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EC에 가입해서 무역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1970년대 들어 남아있는 EFTA 회원국들과 EC간에 양자간 FTA가 체결되었고 1977년에는 EC와 EFTA 회원국 간에 공산품 무역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또한 1984년에는 룩셈부르크 선언에 따라 EC와 EFTA간에 보다 광범위한 부문에 관한 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듬해인 1985년에는 포르투갈이 EC에 가입하기 위해 EFTA를 떠난 반면, 1986년에는 핀란드가 EFTA의 정회원국이 되었다. 1989년에는 EFTA 회원국들 간 수산물 무역 자유화 협

정이 체결되었고, 1991년에는 리히텐슈타인이 EFTA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들어왔다.

### EU와 EFTA의 경쟁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1992년에는 EFTA 7개 회원국과 EC 12개 회원국들이 전 유럽을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블록인 유럽경제지대(EEA: European Economic Area)를 탄생시켰다. 스위스는 국내 비준 획득에 실패해 이에 기입하지 못했고, 총 18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EEA 협정은 회원국 간에 상품과 인력,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초한 유럽 건설, EFTA 국가의 EC 가입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근본적으로 EEA는 자유무역지대이자 관세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동의 통상정책이나 관세정책을 수립하지는 않는다. 또한 EC 회원국 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간에는 여전히 국가 간 국경선이 존재한다. 특히 EC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공동농수산업정책, 관세동맹, 공동무역정책, 대외공동외교안보정책, 통화동맹EMU 등은 EFTA 회원국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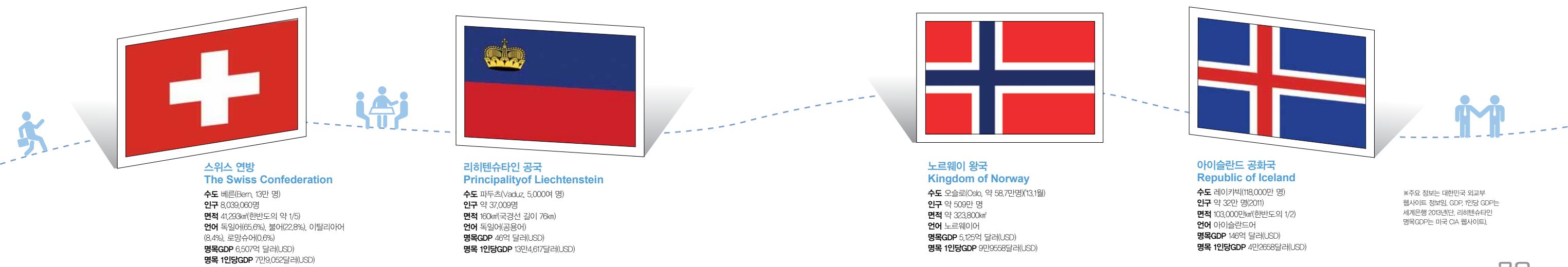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및 스웨덴이 EU에 가입하면서 추가적으로 EFTA를 탈퇴

하였다. 결국 그 이후 현재까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만이 EFTA의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2002년 6월에는 ‘스톡홀름 협정’을 대체하는 바두즈협정(Vaduz Convention)의 체결을 통해 EFTA 회원국간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식재산권의 자유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확립했다.

유럽의 경제통합 역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FTA 형성 움직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유럽의 사례는 같은 지역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통합체가 경쟁적으로 전개될 때, 통합 수준이 더 높은 쪽으로 회원국들이 수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래도 회원국들에게 광범위한 부문에서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도 TPP(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라는 두 개의 경제협력체가 경쟁적 양상을 띠며 전개되고 있다.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 중 더 포괄적 범위에서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회원국들의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❶

1) 1967년 7월 EEC 6개 회원국들은 그동안 같은 회원국끼리 각각 별도로 운영해 왔던 EEC, ECSC 등을 하나로 합쳐서 유럽공동체(EC)를 출범시켰다.

2)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로 EC는 시장의 통합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통합까지 아우르는 유럽연합(EU)으로 재탄생했다.



## 세계의 FTA-⑦ 일본의 FTA 추진동향

## 아베 집권 후 적극적 FTA 추진 가속화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침체를 겪으며 고전하던 일본 경제가 2012년 말 아베 총리가 집권하며 내세운 '아베노믹스'를 필두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경제 부흥을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수출 확대를 삼은 아베 정권은 강력한 엔화 약세와 함께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FTA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 발효(13건 15개국)                                    |
|---|
| • 싱가포르 EPA(2002년 11월 발효, 2007년 9월 개정)           |
| • 멕시코 EPA(2005년 4월 발효, 2012년 4월 개정의정서 발효)       |
| • 말레이시아 EPA(2006년 7월 발효)                        |
| • 칠레 FTA(2007년 9월 발효)                           |
| • 태국 EPA(2007년 11월 발효)                          |
| • 인도네시아 EPA(2008년 7월 발효)                        |
| • 브루나이 EPA(2008년 7월 발효)                         |
| • 필리핀 EPA(2008년 12월 발효)                         |
| • ASEAN EPA(2008년 12월 발효, 2010년 6월 투자·서비스협상 개시) |
| • 스위스 EPA(2009년 9월 발효, 유럽국가와 최초의 FTA)           |
| • 베트남 EPA(2009년 10월 발효)                         |
| • 인도 EPA(2011년 8월 발효)                           |
| • 페루 EPA(2012년 3월 발효)                           |



## ASEAN에 주력했던 일본의 FTA 추진

등 ASEAN 국가와 FTA를 차례로 발효시켰다. 일본의 FTA 추진은 ASEAN 국가들과의 FTA로 시작되었다. 2002년 발효한 싱가포르와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up>1)</sup>가 일본 FTA 추진 역사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이후 일본은 말레이시아(2006), 태국(2007), 인도네시아(2008), 브루나이(2008), ASEAN<sup>2)</sup>(2008), 필리핀(2008), 베트남(2009) 사실 ASEAN과의 FTA 추진은 일본 기업의 활동과 직결된다. 많은 일본기업들은 1990년 대 이후 엔고로 인한 어려움, 일본 국내의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제조기지의 해외 이전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ASEAN 국가로 향했고 양측의 투자와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게 ASEAN과의 FTA는 비용 절감 및 투자 자유화 등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또한 중국이 ASEAN과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협상을 통해 일본과의 FTA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태도를 전환해 왔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ASEAN 국가로 향했고 양측의 투자와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게 ASEAN과의 FTA는 비용 절감 및 투자 자유화 등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며 FTA를 체결하는 등 ASEAN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일본이 ASEAN에서 가지고 있던 기존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본이 현재까지 발효한 13건의 FTA 중 절반 이상인 8건의 FTA가 ASEAN에 밀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ASEAN과의 FTA를 제외하면 일본은 사실상 FTA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일본 국내에서 농업분야 개방이나 국내제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FTA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2010년 11월 '포괄적 EPA(FTA) 기본방침' 정책을 발표하며 기존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기업들이 엔화강세, 높은 법인세율, 인건비, 환경규제, 전력수급불안, FTA 체결 지연 등 이른바 6중고를 겪게 되고 해외 투자 및 이전 확대로 산업공동화 문제마저 대두되자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FTA가 제시된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TA 추진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의미도 담겨있다. 우리나라가 EU, 미국 등 거대시장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자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아베노믹스에서도 일본은 무역에서 FTA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9%에서 2018년 70%까지 늘리고자 하는 목표를 명시한 바 있다. 최근 일본이 호주와 FTA를 서명하고 몽골과의 FTA 타결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연달아 내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 미국, EU 등과 FTA 추진하며 추격 나서

일본의 FTA 추진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바로 미국, EU 등과의 FTA 추진이다. 일본은 2013년 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TPP<sup>3)</sup> 협상에 참여했고, EU와의 FTA 협상을 시작했다. 그동안 FTA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이 태도



▲ 2013년 3월 15일 TPP 참여 선언 후 아베 신조 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를 전환한 것에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그 대상을 미국, EU 등 세계 최대 경제권까지 넓힌 것이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만큼 일본 내부에서는 사실상 미·일 FTA 추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이 TPP 참가를 저울질한 것은 사실 2010년부터만 농업개방과 국내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가 상당해 장기간 결단을 내리지 못해왔다. 하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 확대와 국내 개혁이 절실했던 만큼 아베 총리의 높은 지지율과 정치적 안정성을 배경으로 TPP 참가의 결단을 내리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 국내 개혁 및 제도·규제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실제로 농업 개방에 대해서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일본의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인 만큼 TPP를 통해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농업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일본 국내 여론을 설득했다. 물론 전면적인 개방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쌀, 밀·보리, 소·돼지고기,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 유제품 등 이른바 5대

성역에 대해선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TPP 협상에서는 일본의 시장

개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2013년 3월부터는 EU와의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EU FTA 협상의 경우 EU의 관세철폐와 일본의 비관세 장벽의 철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EU는 비관세장벽 철폐 없는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양측은 안전기준 등에 대한 상호인정(MRA), 규격통일 등 비관세 장벽 등을 중심으로 6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EU 내부에서 일본의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난 6월 EU측은 일본과 협상을 계속 진행할 의사를 밝힌바 있다. 또한 최근 양측 정상이 FTA 조기 타결을 추진하는데 합의한 만큼 2015년 협상 타결 목표가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된다.❶

1) EPA(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와 같은 의미이나 일본에서는 상품·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

2) ASEAN(동남아시아국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

3) TPP(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현재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⑦손소독제와 손세정제

##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손세정제는 ‘화장품’

2009년 신종플루가 대유행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비상이었다. 당시 마스크, 살균효과가 있는 비누,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즉석 손소독제(Instant Hand Sanitizer)들은 대박상품 중의 하나였다. 최근 독감, 이른 더위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손소독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 손소독제는 물로 손을 씻는 것을 대신하는 대용제를 충칭하여 화학물질로 된 액체형 소독제나 젤 형태의 소독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영어로 ‘핸드 세니타이저(hand sanitizer)’, ‘알콜 베이스드 핸드럽(alcohol-based handrub)’ 등으로 불리는 손소독제는 물로 손을 씻는 것을 대신하는 대용제를 충칭하며 화학물질로 된 액체형 소독제나 젤 형태의 소독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종종 손세정제라고도 불린다.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는 다른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손소독제는 바르는 것이고, 손세정제는 씻는 것이다. 즉, 손소독제는 항균효과를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으로 에탄올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손이나 피부의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대부분 분 길 타입 제품이다. 이에 반해,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서 손세정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손 전용 액체비누(핸드워시), 고체형 손세정 비누가 해당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손소독제는 주로 에탄올, 프로필알콜 등이 주성분으로 젤 형태의 액체성상을 가지고 있으며, 핸드백 등에 넣어 다닐 수 있도록 휴대용과 병원 등의 대용량으로 판매되기도 하며, 물이 없는 상황에서 손에 소량을 덜어내어 두 손을 비비면 알코올이 휘발되면서 살균효과가 발휘되는 물품을 말한다.

사실 소매용 소독제, 살충제 등은 HS3808 호에 분류되는데, 이 호의 해설서에 보면 ‘(c) 소독제·살충제 등으로서, 의약품(수의용 의

### 손소독제:

#### ‘의약외품’으로 규정해 3004호로 분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품목분류사례가 있는데, 손소독제는 기타 소매의약품이 분류되는 HSK3004.90~9900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고 결정했다. 즉, 인체의 살균 소독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의약품의 주요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류한 것이다.

실际 소매용 소독제, 살충제 등은 HS3808 호에 분류되는데, 이 호의 해설서에 보면 ‘(c) 소독제·살충제 등으로서, 의약품(수의용 의

▶ 손세정제는 비누에 분류되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숫비누(HS3401.1), 빨래비누(HS3401.19), 핸드워시를 비롯한 각종 액체비누(HS3401.30) 및 종이비누(HS3401.20)까지 모두 HS3401호에 분류된다.



◀ 우리나라의 의약품관련 법령에서는 손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HS3004.90호에 분류하고 있다.

※ 사진은 글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 글 내용은 특정 상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약품 포함)의 주요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HS3003호 또는 HS3004호)은 HS3808호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손 소독제가 기타 소매용의약품인 HS3004.90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손소독제가 과연 의약품의 주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들고 정밀한 논의가 더 필요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2004년 당시에는 주로 병원 등에서 환자의 손 소독용으로서 환자의 손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의 의약품관련 법령에서는 손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HS3004.90호에 분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의 품목분류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일본이나 EU 국가들에서는 손소독제를 소매용 소독제가 분류되는 HS3808.94호에 분류하고 있다. 동일 물품이지만 손소독제를 미국에 서 분류할 때는 좀 다르다. 즉, 미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수년 동안 일관되게 이 물품을 HS3824호인 ‘특별히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화학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동일하여야 할 품목분류이지만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HS3824호에 분류되는지, HS3808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3004호에 분류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이 서로 달라지는 상황(HS3824와 HS3808: 6.5%, HS3004: 8%)이 발생할 수 있고 더욱이 FTA가 활성화된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품

목분류가 국가마다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그 적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협정국 간에 품목분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듯 동일 물품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HS 코드에 대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는 수입국의 FTA 특혜세율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협정국 간 또는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분쟁을 양산해 낼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손 세정제:

#### ‘비누’에 해당하는 3401호로 분류

현행 관세율표에서는 HS3401호에는 비누가, HS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가 분류되고 있다. 비누 역시 유기계면활성제의 일종이지만 HS 품목분류에서 특별히 계면활성제와 구

인이 되고 건강에도 유해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세제 사용량의 80%는 합성세제이다. 세탁용 뿐 아니라 주방용 세제 등 우리나라의 가정용 합성세제의 소비량은 급속히 증가해왔다.

과거에는 저렴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세척력을 강조한 제품, 피부에 순한 제품,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한 생분해도가 좋은 제품 순으로 발전하여 최근에는 날로 고급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항균성, 살균력, 친환경 등 여러 기능성을 겸비한 제품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다. 제품의 성상으로는 액상을 포함하여 고형 및 파우더 형태가 있으며, 세제의 농도에 따라 고농축 제품과 농축하지 않은 일반 제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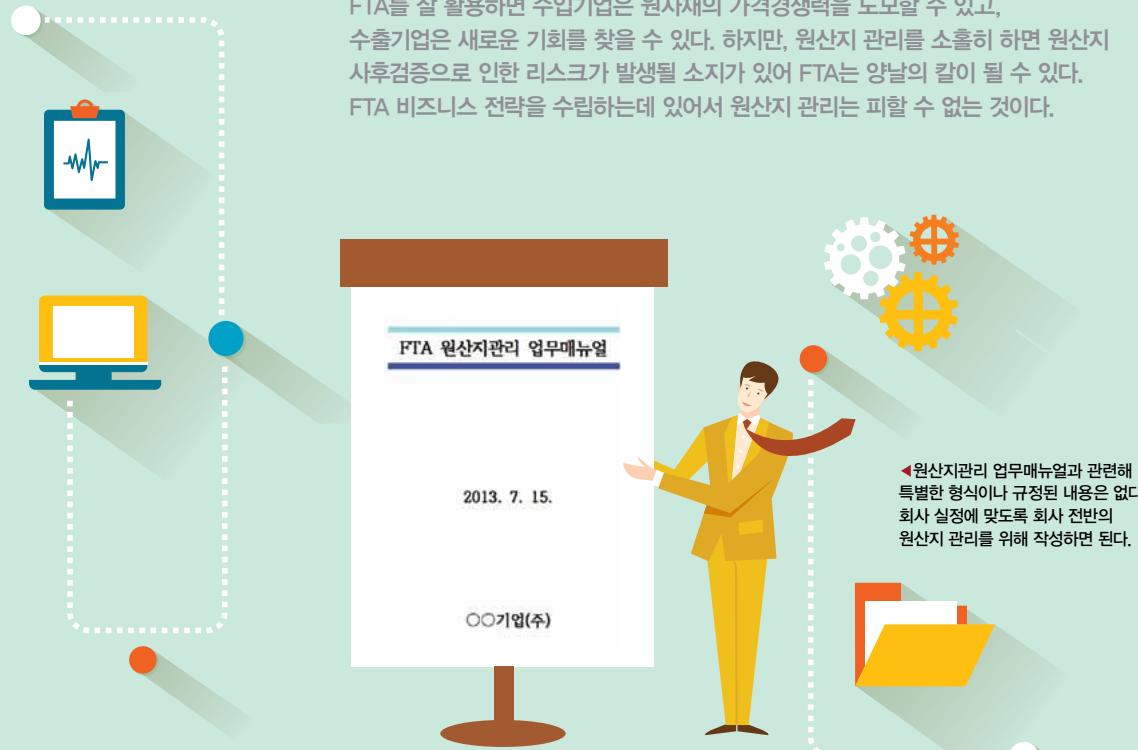
계면활성제를 기재로 하여 조제되는 각종 소매용의 세탁용 세제, 과일·야채 세척제, 주방 세제, 세탁조 세정제, 섬유의 얼룩 제거를 위한 섬유세정제, 렌즈 세척제 등은

HS3402.20호에 분류된다. 또한, 유아용품 및 각종 생활용품, 욕실, 주방 등의 세척 및 살균에 사용되는 클리너, 찌든 때를 제거하기 위한 다목적 클리너도 HS3402.20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지만 계면활성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으로 세탁시에 사용되는 섬유유연제와 표백제는 HS3809.91호에 분류된다.

참고로,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HS3401호와 HS3402.20호, 그리고 HS3809.91호에 대해 모두 원산지결정기준을 HS 4단위 세번 변경기준으로 정하고 있다.❶

## 원산지관리 실무-⑥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 업무 프로세스부터 확실히 갖추자!



원산지 관리 업무에 대한 기본 관리체계는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FTA 원산지 관리 업무매뉴얼의 구비를 통해 원산지 판정 등의 업무가 프로세스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출기업은 수출물품 매번별로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또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법한 원산지 판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 역내산 제품으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향후 사후검증의 대응을 위하여 원산지 판정에 대한 객관적 입증서류의 보관 등

현재 많은 IT업체에서 앞 다투어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FTA-PASS'와 'FTA-Korea'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다.

중소 수출입 업체 입장에서는 관세청 등 FTA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스템 구축의 고비용에 따른 기회비용 문제, 원산지 전담 인력의 문제, 자료 업데이트 문제, 품목분류 결정 문제, 사후검증 문제, 자료와 시스템의 연동문제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요건을 보면, 기업들이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을 보유하여 이를 통해 원산지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대신 업체 내에서 부서 간 FTA 원산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관리 시스템 도입을 생각하기 전에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수출입업체의 FTA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기 전에 업무 단계별 FTA 원산지 업무프로세스부터 체계화해야 한다. 업무매뉴얼에 들어갈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 01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 및 수출계약

먼저 기업 내에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서명카드' 작성과 함께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마련한다 (위 두 서류는 지난호 참고).

수출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에서는 거래상대방과 FTA 원산지증명서 제공을 계약서상에 명문화하고 수출 대상국(수입국)의 수입 시 적용되는 HS코드 확인 및 FTA 특혜관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02 수출물품 제조 및 원산지 판정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수취하여 국내 도착 후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원자재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수취하고 원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팀으로부터는 거래증빙자료를 수취한다. 국내에서 원자재를 납품받는 경우에는 납품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하면서 필요 시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다.

자재관리팀이나 회계팀에서는 원자재의 납품단가 관리 및 HS 코드 관리를 통해 원산지 BOM(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 또는 원자재 소요명세서로 불림) 작성이 용이하도록 협력해야 하며, 자재관리팀 또는 생산관리팀으로부터 BOM 및 원가산출내역서, 제조공정도를 수취한다. 생산팀에서는 완제품을 제조·가공하게 되는데, 동시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최종적으로 수출물품이 해당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의 주요 내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 주요 생산제품 설명
  - 제조공정도
  - 해당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원재료의 품목번호 부여 및 관리, 원재료의 역내산 및 역외산 구분 기준 관리
  - 원재료 공급업체 관리
  - BOM 및 제조원가계산서, 원산지소명서 등 각종 서류의 작성 및 보관방법
  -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습득 자료 등

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판정)한다.

### 03 수출이행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물품이 제조되거나 국내에서 확보되면 해당 원제품에 대해 선적서류(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수출제반 서류를 구비하면서 수출통관절차를 이행 후 수출신고필증을 수취한다.

원산지관리 전담자는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자료(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등)를 작성하고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송장에 원산지 문안을 표기하거나 별도의 증명 서식에 작성하거나, 기관발급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한다.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수출 제반서류와 함께 수출 대상국에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한다.

### 04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사후관리

우리나라 관세청을 통한 간접증명방식과 상대국 세관당국의 직접검증방식 중 어떠한 검증 방식이든 일정기간 이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산지관리전담자는 원산지증명에 사용되고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일정한 체계 하에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난 후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유지, 원산지증명에 사용된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한다.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과 관련해 특별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회사 실정에 맞도록 회사 전반의 원산지 관리를 위해 작성하면 된다. 대체로 FTA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에는 업체별로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지에 대한 절차, 주요 생산제품 설명, BOM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품목분류(HS 코드) 관리 현황, 협력업체 관리 등 원산지 사후검증을 대비한 준비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FTA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의 마련으로 원산지 업무체계가 확립되고, 실무적인 사이클이 반복되게 되면 원산지 판정이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다.

사실, FTA 원산지관리 업무의 전체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작성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관리 업무는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산지관리 전담직원이 훌륭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최고경영자부터 전 직원이 FTA 원산지 사후검증의 리스크를 처음부터 인지해 수출업무를 FTA 원산지관리 프로세스에 부합하게 재정립함은 물론, 상대국 세관의 사후검증에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영남 화가&amp;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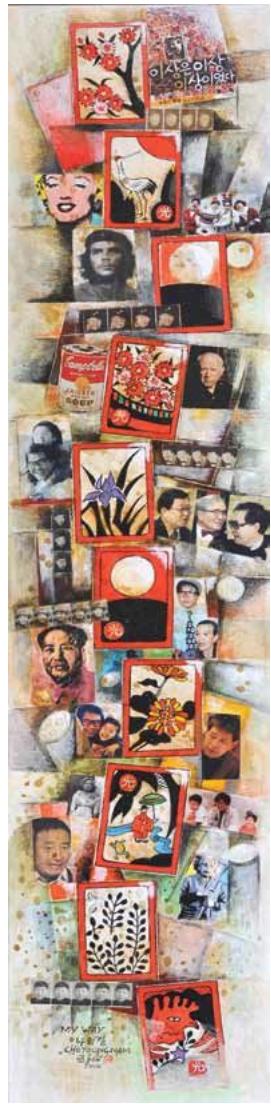
## 화투 계속 그리니 결국은 날 인정해 주더라

이제는 '화가'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릴 법도 한 가수 조영남. 그가 8월 3일부터 24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작품 전시회를 연다. 뭐라도 하나 진득하게 오래 하면 언젠가 세상이 알아주는 날이 오는 걸까. 화투짝만 잔뜩 그려진, B급으로 취급받던 그의 그림들은 이제 당당히 A급 미술관에서 모셔가는 작품들이 됐다.

화가로서의 조영남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사람 이 많을 것이다. 그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다. 고등학교 때 학내 미술부장을 한 것 이 전부다. 그러나 오랜 세월 다져진 대중문화 아이 콘으로서의 조영남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그의 작품에 대해선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테크닉보다는 발상을 즐기는 그림.'

조영남은 누가 뭐래도 성공한 사람이다. 그의 집 이 말해준다. 통창으로 영동대교가 보이는 남향의 이 15층 아파트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비싼 집이다. 지하 3층 주차장부터 심상치 않았다. 5억~6억 원 을 넘나드는 페라리 F12 베를리네타, 롤스로이스 팬 텁, 낫산 GT-R(이건 2억 원에 못 미친다) 등 체급별 로 가장 비싼 차들이 즐비했다(조영남의 차는 아니 다). 이웃 중 유명인으로는 가수 비가 있다.

그는 대부분의 인터뷰를 집에서 한다. 엘리베이 터가 열리자 현관문 앞에 대형 그림들이 즐비하다 (이 아파트는 한 가구가 한 층 전체를 사용한다). 전 시회에 내놓을 작품들을 고르기 위해 창고에서 일부 꺼내온 것들이다. 활짝 열린 현관문 때문에 초인 종을 누르기가 머쓱해 안으로 들어갔다. 대형 캔버 스 사이즈의 그림을 봇으로 마무리하던 조영남이 “왔어?”라며 반긴다. 대충 쓴 야구모자와 안경이었지만 형식을 따지지 않는 그런 것이 조영남의 매력 이다. 올해 일흔 살이지만 목청은 전성기 그대로다. 전시회가 코앞이라 손으로는 그림을 그리고 입으로는 인터뷰에 응했다.



### “그림 그리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그의 집을 보는 것도 그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다 해봤다. 세속적인 성공도 해 봤고, 사랑도 많이 해 봤다. 그렇지 만 세상 이치라는 게, 해보기 전에는 죽도록 하고 싶지만 막상 해 보면 시시해지는 법이다. 그 와중에 그가 찾은 '시시해지지 않는 가장 재밌는 일'이 바로 그림 그리기였다. 스스로도 “나 개인으로서 이 거 이상으로 재밌는 게 없다”고 얘기했다.

이런 사람에게 기준의 방식을 따르는 근엄한 미술 관행이 재밌을 리 없다. 미술을 오래 해온 사람이 다다르는 경지를 그는 음악에서 이미 도달한 뒤였다. 그가 만약 새로이 학교를 들어가서 미술을 배웠다면 채점방식에 맞는 그림부터 그렸어야 했겠지만, 자유로운 영혼이 이런 것을 용납할 리 없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 30~40년 전쯤 미국에 있을 때 화투를 그리기 시작했다. 친구들로부터 편장을 들으면서도 그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다. 왜 하필 화투였을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잖 아? 그런데 일본 그림이 들어간 화투는 열심히 쳐. 이게 아이러니야. 이런 삶의 모순을 고발해보자고 그린 거지.”

아이디어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우려는 없었을까?

“예술이란 것은 어쨌든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추구해야 하는 거잖아. 음악은 유행이 있지만, 미술은 남들 따라 그리면 아무도 점수를 안 줘. 화투를 그리다 보면 언젠가 환영 받으리란 자신감이 있었지. 지금은 화투 그리는 가수로 유명해졌잖아. 내 예측이 맞은 거지.”

### “현대미술 왕따 안 시키려는 게 내 의도”

이번 전시회 제목은 '왕따현대미술 조영남'이다. 광고를 보면 '(왕따)시키는가! 당하는가!'는 카피가 도발적이다. 의도가 재밌다. “현대미술이 대중과 고리 되어 있다. 그게 왕따다. 현대미술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따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중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난 왕따 안 시키려고 애쓰는 거다.”

포스터는 검은 옷을 입은 조영남이 모델 송경아 와 함께 체스를 두는 사진이다. 뒤에는 화투짝이 액자처럼 걸려 있다. 무슨 뜻일까? “현대미술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마르셀 뒤샹은 체스를 좋아해서 화가를 그만두고 체스선수로 남은 생을 마감했다. 뒤샹이 나체 여인과 마주 앉아 체스를 두는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그걸 패러디했다. 나체로는 안 돼서

“화투, 바둑, 땁지 등 ‘잡스럽지만 재밌는 소재로 그는 작품을 만든다. ‘하찮게 여기면서도 그걸로 재밌게 놀지 않나’라는 것이 그것들을 그리는 이유다.”

”



4차원적인 코디를 했다.” 송경아 그림도 이번 전시 회에 몇 개 넣기로 했다. 단순히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송경아의 그림에 조영남의 그림을 추가한 협업 작품이 전시된다. 인터뷰가 이뤄지는 동안 송경 아의 그림이 도착해 화투그림을 추가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젊은이 입장에선 조영남처럼 나이 드는 것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재밌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인가’라고 물었다. “그렇지. 사람은 자기가 본능적으로 재밌는 것을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다 아는 거지. ‘내가 재밌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 할 필요가 없다.” 선문답이었다. 지금은 화가로서의 활동이 더 많다 보니 가수로서의 활동 계획은 없을까? “앞으로도 쭉 하겠지. 뭐 하겠어. 그런 거 외에.”

이렇게 주관이 뚜렷하니 사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노, 노, 노(마치 노래를 부르는 듯했다)”라고 고개를 흔든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 내 주제에 무슨, 남에게 어떻게 살라고 할 수 있겠나?” 이 때 거실 한켠에 놓인 작품에 쓰인 글귀 ‘겸손은 힘 들어’가 새삼 눈에 들어왔다.❶

각궁 명인 김윤경 궁장

## 작으면서도 강한 각궁의 비밀은 천연 복합 소재

한국인에게는 활쏘기 유전자가 배여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올림픽에서 한국의 강세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역사적으로도 활 쏘는 민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보여준 활의 위력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통활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라는 호기심을 안고 전통활 장인을 만나러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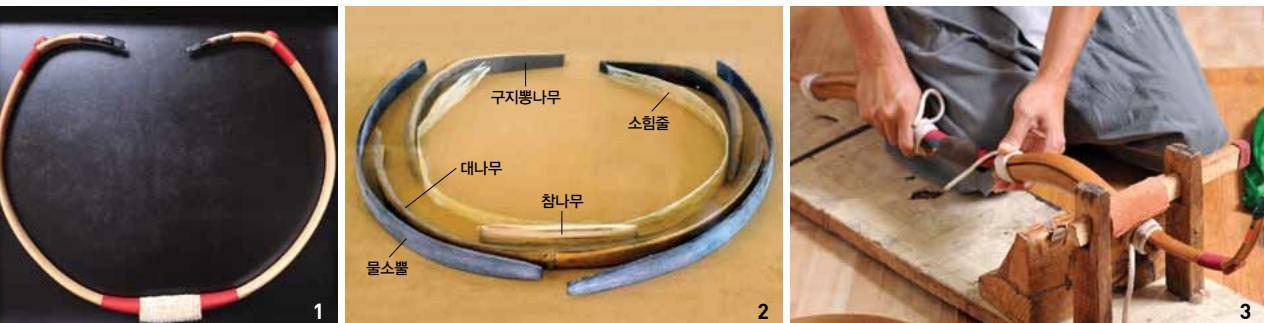
전통활을 만드는 장인은 두 갈래로 나뉜다. 활에 해당하는 각궁을 만드는 궁장(弓匠)과 활살에 해당하는 시위(矢匠)이다. 활이 더 궁금했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궁장을 만드는 장인은 두 갈래로 나뉜다. 활에 해당하는 각궁을 만드는 궁장(弓匠)과 활살에 해당하는 시위를 만드는 시위(矢匠)이다. 나이에서 짐작되듯 김 궁장은 부친인 고 김박영 궁장(1930~2011, 중요무형문화재 47호)의 뒤를 이어 전통 방식으로 각궁을 만들고 있다. 각궁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17년째고, 부친이 작고하며 활로서기한 지는 3년이

의 사랑방으로도 쓰고 행사도 가능한 다목적 건물이다. 평소에는 김 궁장과 그의 조수 역할을 하는 아내가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다. 나이에서 짐작되듯 김 궁장은 부친인 고 김박영 궁장(1930~2011, 중요무형문화재 47호)의 뒤를 이어 전통 방식으로 각궁을 만들고 있다. 각궁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17년째고, 부친이 작고하며 활로서기한 지는 3년이

조금 넘었다. 김 궁장은 활을 만들지 않았다면 제조업 분야 제품 개발 연구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인상이다. '밀덕(밀리터리와 오타쿠의 합성어)'처럼 눈을 반짝거리며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했다.

**5가지 복합 탄성 소재가 전통활의 비밀**

올림픽에서 자주 보는 서양식 경기가 '양궁'이



1 보관 상태인 각궁의 모습. 동그랗게 말린 모양으로 평소에는 허리춤에 차고 휴대할 수 있다. 2 각궁은 성질이 각기 다른 5가지 소재가 적재적소에 쓰인다. 작지만 파괴력이 강한 과학적인 무기다. 3 보관 상태의 활을 반대로 휘어서 시위(시)를 매면 흔히 보는 활의 모습이 된다.

라면, 전통활을 쏘는 시합의 정식 명칭은 '궁도(弓道)'다.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전국적으로 동호인들 중심으로 궁도대회가 수시로 열린다. 바둑, 태권도처럼 급수와 단이 있으며 심사를 통해 승급, 승단을 한다. 1~3급, 1~10단까지 있다. 5단 이상부터는 '명궁' 칭호를 붙이며 대회에서는 전통활(각궁)을 써야 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럼 전통활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천연재료가 아닌 카본섬유로 만든 활이다. 개량궁 또는 카본궁으로 불린다. 반면 각궁은 동식물성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복합이라고 해서 화학적으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각기 다른 재료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새시가 충격 흡수를 위한 무른 소재, 승객 보호를 위한 단단한 소재 등 강도가 다른 복합소재로 이루어진 것과 비슷하다.

우선 중심(core)이 되는 부분은 대나무다. 유연해서 탄력이 좋은 소재다. 길게 잘라 열을 가해 동그랗게 휘도록 만든다. 손으로 잡는 부분은 단단한 참나무로 보강한다. 대나무 바깥쪽은 시위를 거는 부분인데 유연하면서도 단단함이 있는 구지뽕나무를 쓴다. 시위가 걸리는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물소뿔로 보강한다. 반대쪽 면은 소힘줄로 보강한다. 각기 다른 성질의 다섯 가지 재료가 탄성을 최적화하고 있다. 접착제는 민어부레를 끓여서 쓴다. 김 궁장은 모든 재료를 전통 방식 그대

로 쓰고 민어부레를 직접 구입해 풀을 쑨다. 한국에서 물소뿔이 났던가? 옛날 옛적에도 물소뿔은 중국에서 수입했다.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일본 등을 통해 들여오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한우뿔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물소뿔을 사용한 것이 가장 성능이 좋다.

이렇게 만든 활은 평소에는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다. 딱 허리춤에 감고 다니기 알맞다. 그러다 필요해지면 동그란 모양을 역방향으로 꺾어서 시위를 건다. 반면 일본의 활은 대나무만의 탄력을 이용하므로 길이가 2미터에 가까웠다. 휴대하기 힘들고 복합소재로 탄성을 최대화한 각궁에 비해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위는 명주실 또는 면사를 꼬아서 만드는데, 요즘은 각궁을 구입한 뒤 서양활(양궁)에 쓰이는 줄로 교체해서 쓰는 사람이 많다. "쏘는 맛은 면사가 좋은데, 아무래도 멀리 나가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김 궁장의 설명이다.

기능적인 몸체를 다 만든 뒤에는 자작나무 껍질로 외피를 감싼다. 이것이 습기와 물을 막는 역할을 한다. "부레풀이 습기에 약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개량궁도 외피는 각궁과 비슷한 무늬를 입힌다. 그래서 시위를 얹은 활을 보면 비전문가는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각궁은 사용하지 않을 때 시위를 풀어 동그랗게 말린 모양으로 보관하지만, 개량궁은 모양이 그대로다. 활터에서 시위가 매어진 채 받침대에 나열되어 있는 활은 거의 다 개량궁이라

고 보면 된다. 김 궁장은 "각궁이 개량궁보다 예민해 과녁을 맞히기가 더 어렵지만 손맛이 좋다. 또 화살을 보내고 남은 에너지를 재료들이 모두 흡수해 팔에 무리가 없다. 카본은 충격이 그대로 팔에 전달된다"며 각궁의 장점을 설명했다.

### 쏘는 자세 늘 동일해야 과녁 맞힐 수 있어

궁도대회 시합방식은 총 15발(5발씩 3번) 또는 25발을 쏘는 것으로, 145m 전방의 과녁을 맞힌 회수를 겨룬다. 거리가 멀고 눈금자가 없으므로 과녁을 맞히기가 쉽지 않다. 한 번의 시합에서 과녁을 다 맞히는 선수는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쏠 때마다 자세가 동일하지 않으면 과녁을 맞힐 수 없으므로 언제 쏘도 똑같은 자세가 나오도록 연습해야 한다. 골프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조선시대 무과시험에는 말을 타고 과녁을 맞히는 시험도 있었으니, 전투력이 상당했을 듯하다.

님의 활을 험부로 건드릴 수 없으므로, 활터에서 공용으로 쓰는 개량궁을 잠깐 잡아보았다. 어느 정도는 당겨지나, 최대한으로 당기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당겨야 한다. 놓으면 다시 당겨야 한다. 놓으면 다시 당겨야 한다."는 당부를 몇 번 들었더니 더 세게 당겨 볼 의지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궁도를 배운다면 145m를 날아가 과녁을 맞히는 쾌감은 꽤 상당할 것 같았다.❶



## 제11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협력업체에 대한 FTA 활용 지원 강화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금) 12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11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했다. FTA 활용촉진협의회는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주재하며, 이 날 회의에는 관세청·증기청 차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5명 및 무역협회, KOTRA,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3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지역 순회 FTA 종합 설명회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관세청이 보고한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세관에서 시범운영한 데 이어 올해 2월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세관)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총 58개 업체, 383건이 사전확인 및 심사 중이며, 향후 세관장 확인제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2~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용 실적을 제고하기로 했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이 중요하다"면서 "협력 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원산지확인서

'원산지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작성·제공하는 서류를 말함(FTA 시행규칙 제 6조의 3)

업들을 위해 FTA-PASS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엑셀 연계, 서버 내 자료보관(웹용) 등 편의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는 '지역 순회 FTA 종합 설명회 추진계획'과 관련, 하반기에 경제파급 효과가 큰 FTA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중앙-지방간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순회 FTA 종합 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설명회는 산업부·지방상의 등 FTA 지역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관계부처(청)가 참여하며, 지자체 공무원 및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이 중요하다"면서 "협력 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한·중 FTA 제12차 협상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큰 틀 정해



한·중 FTA 제12차 협상이 7월 14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 5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중국 측은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 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중국 측 제조업 조기판세철폐 기간, 우리 측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서비스 부문에서 그간 우리 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기) 방식을, 중국 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기) 방식 채택을 주장해 왔었는데, 협정 발효 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중국은 2013년 11월 18일 3중전회(중국 공산당 제18

차 전국대표회의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시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이에 따른 국내법 정비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등 제반 후속조치를 추진 중으로, 이러한 내용이 후속 협상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그간 우리 측은 투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중국 측은 투자 보호 요소만 포함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협정 발효 시에는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일정 기간 내(후속협상 스케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 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금번 협상에서는 규범·협력분야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이뤘다. 경쟁, 전자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완전 합의하고, 환경 챕터에서 실질 진전이 있었으며, 통관절차,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을 이뤄냈다.

양측은 차기 제13차 협상을 9월경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 원산지증명서 통합 발급 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렵지 않아!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통합(원스톱) 발급 시스템' 1단계 사업을 구축했다. 기관발급의 경우 그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

는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항목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신청 시마다 각 항목을 따로 입력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1단계 사업 완료로 수출신고 시 민원인이 입력한 항목 중 원산지증명서와 중복되는 사항(운송 수단, 적재량, 목적국, 포장종류 부호/개수 등 23개 항목)은 자동으로 입력되는 '불러오기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입력이 종전보다 훨씬 편리해졌다.

이번 조치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 필요한 아세안 및 인도로 수출하는 약 4만 5,000여 개 기업의 연간 12만 건에 이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 및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들이 더욱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본다.

원산지증명서 통합 발급 시스템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추진 과제의 하나로 앞으로 2년에 걸쳐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신고가 동시에 수리·발급되는 통합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이다.

2016년 상반기에 이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면 수출신고 한번으로 원산지증명서까지 발급될 수 있어 연간 약 19억 원에 달하는 무역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 '원산지증명서 통합(원스톱) 발급 시스템' 단계별 목표

- 1단계(2014년):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자동입력 기능
- 2단계(2015년):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 일괄신청 시스템
- 3단계(2016년 상반기):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 동시수리시스템

## GAT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으로

1970년대 이후 급증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적인 무역규범화를 위해 약 7년  
에 걸쳐 다국적 간 교섭이 있었다. 그 결과 19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무역교섭위원회  
(TNC)에서 GATT 사무총장의 제출로 승인 채택된 협정으로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같은 날 발효한 'WTO(세계  
무역기구) 협정'의 일부가 되었다. 한국 역시 같은 날 GATS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GATS는 WTO 설립협정 부속서 1B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문(총 6부 29개조), 분야별 부속서(8개), 결정·양해각서 등의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이 협정은 정부가 구매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교역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UR 서비스 업종분류표에서는 서비스를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 등  
12개 분야로 대별하고 있다.

GATS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서비스교역에 일률적 의무는 최혜국대우(MFN) 및 공개주의이다. 둘째,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는 양허계획서에 기재된 조건 및 자격요건에 대해 각 체약국이 자국의 유사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다른 체약국에게 부여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교역의 점진적 자유화  
를 위해 각 체약국은 해당 서비스교역에 대해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 △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 △약속이행에 대한 구체  
적 일정 및 약속의 발효시기 등을 포함한 양허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협상한다.



##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농수산업에 관심이 많아 매호 '강소농을  
찾아서' 코너를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FTA의 의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농수산업 등 1차 산업이라는 생  
각에 다양한 강소농의 사례를 보며 위기  
극복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호 주인  
공 박인규 애플수박 농장 대표로부터 위  
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준임(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FTA 발효 3주년이 된 EU와 우리나라의  
무역교역을 분석한 자료가 매우 인상 깊  
었습니다. 자동차가 EU로 선적되는 풍경  
을 보니 앞으로의 수출실적도 많이 기대  
가 됩니다. 여러 가지 양주와 화학주가 판  
을 치는 주류업계에서 막걸리만으로 100

주년을 맞이했다는 배다리막걸리의 품질  
과 제품의 우수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동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전에는 FTA가 단순히 물질적 무역에 영  
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었는데 '함께하는

FTA'를 자주 접하면서 문화,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 그 효과가 발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FTA사후검증대  
응 완전정복' 사례 매뉴얼이 발간되어 실

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  
니다

이갑수(전남 장성군 삼계면)

모든 내용이 유익해서 몇 번씩 읽었지만  
그 중 '한국의 맛: 떡' 편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흔히 맛볼 수 있는

떡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을 대표  
하는 전통음식 떡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아름답고  
새로운 모양으로 변신한 떡이 세계로 뻗

어나간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이  
생기네요.

이양우(경기도 시흥시 신천마을 4길)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떡의 내용과  
매력에 뚝 빠졌습니다. 예쁘게 모양이 잡  
힌 한 입 크기의 떡이 한류열풍을 타고

널리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수  
박이 공중에 주렁주렁 매달려있으니까  
수박이 아니라 사과 같네요, 사과를 먹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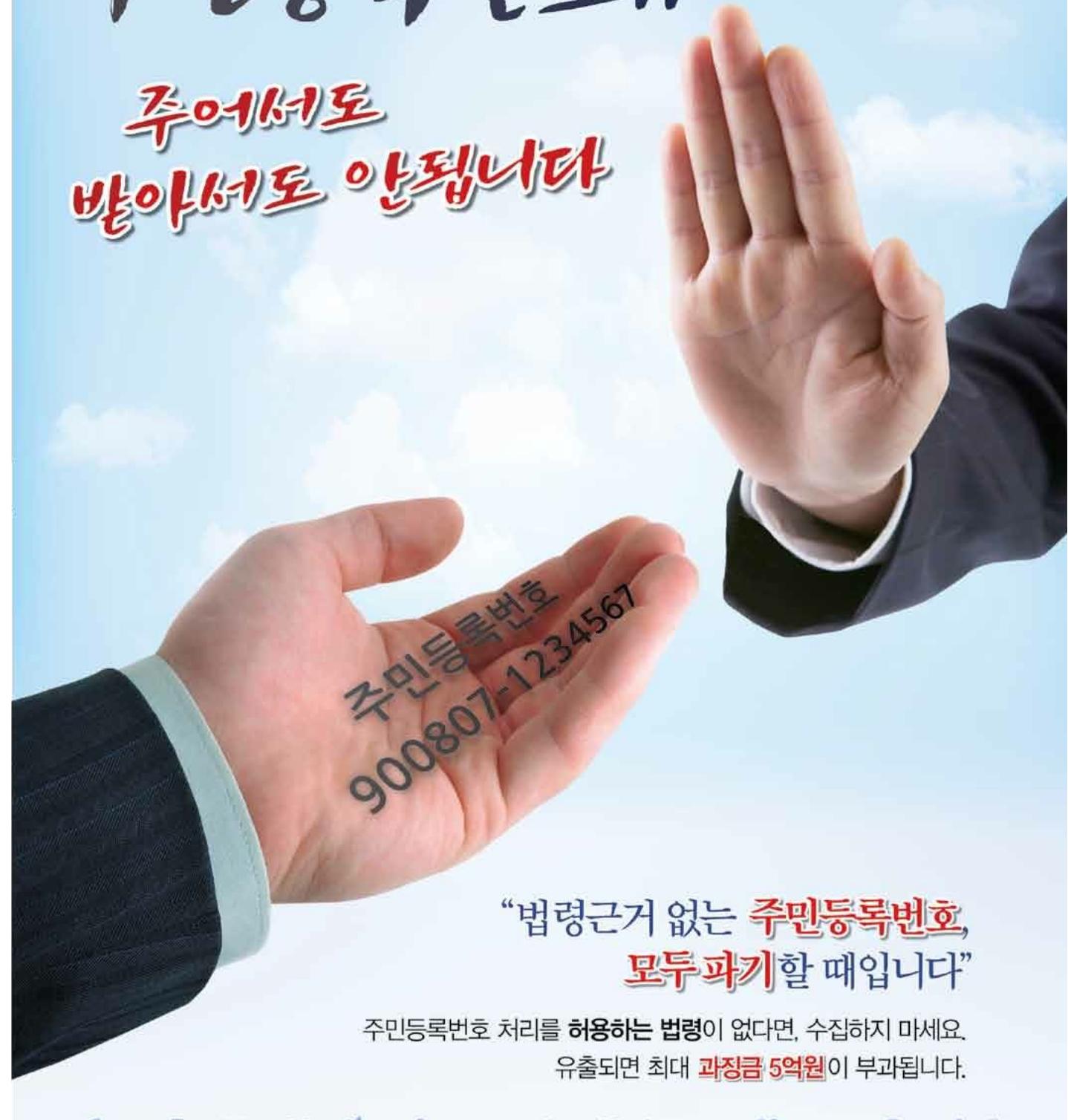
이 수박을 시장에서 꼭 사먹을 수 있었으  
면 좋겠습니다.

조광진(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2014년 8월 7일

# 주민등록번호!!

주에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제도 및 업종별 주민등록번호 사용여부 상담 : ☎ 118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 [www.privacy.go.kr](http://www.privacy.go.kr)▶ 자료마당▶ 지침자료

#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